

기업의 연쇄도산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경제는 저성장과 고실업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국민소득이 줄면 세금도 줄어들게 돼 정부는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린다. 그렇지만 정부는 돈 쓸 곳이 더 많아진다. 수많은 실업자의 생계를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예산 지출이 늘 수밖에 없고, 저성장 타개를 위한 재정투자 예산도 더 필요하다. 결국 세금을 내기 어려워진 국민과 더 많은 세금을 거두려는 정부 사이에 조세 마찰이 증폭되게 된다.

#### 사. 대외경제개방

##### (1) 무역자유화

IMF와의 합의에 따라 무역관련 보조금, 수입 제한 승인제, 수입선 다변화제도를 폐지하고 수입형식 승인제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것은 국내 수출 및 수입업계의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짐을 의미한다.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폐지 요구는 일본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그간 일제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수입 확대를 수입선 다변화제도로 묶어왔는데 국제관행과 맞지 않는 제도이지만 한일간 특수성으로 불가피한 조치였다. 지리적 문화적 여건을 감안할 때 수입선 다변화제도가 폐지되면 국내 자동차 전자산업은 국내 시장에서도 큰 어려움을 처하게 된다. 결국 이번 IMF자금의 한국 상륙을 계기로 한국의 은행과 재벌이 선진국 자본의 지배와 영향아래 놓이게 됨은 물론 국내시장도 이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맞았다. 수입형식승인제의 투명성 제고는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증대를 초래할 전망이다.

주식과 채권시장의 전면개방을 담고 있는 IMF 요구 조건은 몇 년 전부터 한미 금융협상의 단골 의제였다. IMF는 단기채·국공채·기업어음(CP) 등 채권 시장 모두를 개방하도록 요구했는데 이는 미국 핫머니세력들의 이해관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특히 단기채 시장의 개방은 이들의 염원이다. 상당기간 고금리시대 지속이 예상되므로 이번 시장개방으로 주식보다 채권시장에 해외자금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가 18~20%선을 유지할 경우 국제시장의 자금조달 코스트가 연리 7% 정도이고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환리스크를 연 8%로 상정해볼 때 국내 채권 투자를 통해 적어도 연 3%는 확실히 쟁길 수 있다. IMF가 200조원이 넘는 국내 장기채시장 개방에 만족하지 못하고 37조원에 불과한 단기채시장까지 열도록 주문한 것은 단기채 대부분이 회사채에 비해 부도리스크가 작은 국채와 공채인데다 회임기간이 짧아 그만큼 가시적 자금유인 효과가 크다고 본 것 같다.

또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를 1인당 현행 7%에서 25%로, 총 26%에서 50%로 확대하라고 한 것은 미국 다국적기업과 금융기관의 이해와 일치한다. 예컨대 미국 크라이슬러사가 한국에 자동차 자회사를 갖고 싶으면 인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돈을 주고 주식을 충분히 사들이면 된다. 주가와 원화가치가 폭락한 상황에서 한국의 자동차회사를 소유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돼버렸다.

반면 주식시장은 전면 개방되더라도 자금 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라 분석이다. 한국전력, 포항제철과 같은 핵심우량주등 일부 관심종목에 매수세가 편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달초 외국인한도를 완전 개방수준에 가깝다는 26%까지 높였는데도 외국인

내 대기업 인수·합병(M&A)을 용이하게 하려는 측면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외국인들이 금융·통신·유통·서비스·소프트웨어 등에 진작부터 눈독을 들여와 이들 업종에 M&A의 회오리가 닥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채권시장 개방과 함께 외국인 1인당 주식투자 한도 폐지와 종목당 투자한도 대폭 확대는 자본시장의 전면개방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외화유입 효과는 있지만 단기금리차를 노리는 투기성 핫머니가 대거 몰려들어 국내시장을 좌지우지할 것은 뻔하다. 사소한 여건 변화에도 거액의 자금이 일시에 움직이는 핫머니의 속성상 언제 금융시장을 대혼란에 빠뜨릴지 알 수 없다. 우리 경제가 몇몇 국제 펀드매니저의 손에 놀아날 우려가 높다. 개방에 앞서 외국자본의 유출입경로와 과실송금절차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기를 초래한 주범 중 하나인 금융정보가 완전히 공개된다. 외환보유고는 물론 선물환거래내용, 금융기관 부실채권, 소유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 4. IMF 구제금융사태에의 대응방안

IMF 긴급구제금융이라는 경제위기사태에 직면하여 우리 사회는 재벌을 주축으로 하여 자본가계급이 추구하는 파시즘적 대응과 노동자계급이 추진하는 민주적 개혁과 복지국가로의 이행이라는 대안이 대립될 것이다.

극우 민족주의, 사이비 애국주의로 외파를 포장한

수 있었던 시대착오적 대응방식이다. 이것은 구제금융을 제공할 IMF가 결코 용납하지 못한다.

파시즘적 대응의 핵심은 대량 해고등으로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려는 기도이며 이것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첫째, 내수 침체에 의한 불황의 장기화, 추가적 실업의 증가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빈곤에 처한 노동자들의 좌절감에 의한 약탈 등 사회혼란이 예상된다. 셋째, 대량해고 노동의욕이 침체된다.

경제위기의 가장 큰 책임이 재벌에게 있다면 책임에 따른 부담도 재벌총수 일족들이 가장 많이 져야 한다. 경제위기의 원인인 재벌경제와 부패한 수구정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고서는, IMF 구제금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다.

##### 가. 단기적 금융위기 극복

최우선 과제는 부실 금융기관 정리와 함께 금융기관이 진 부실채권을 정리함으로써 금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하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스웨덴이 1990년 외환금융위기에 처했을 때 대처한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다.

스웨덴은 부실은행을 국유화하고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했는가 하면 정부가 돈을 지원하면서도 철저히 시장원리를 고수해 마침내 조기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스웨덴정부는 금융권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4.7%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했고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금융기관 신인도 하락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조립을 취했다. 덕분에 부실금융기관이

또 부실은행의 주식을 100% 인수해 이들 은행을 국유화해 부실의 파급을 조기에 차단하고 부실은행의 지원 절차와 지원 근거를 철저히 시장원리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정리과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이와 함께 부실 금융기관의 지원은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의 주식 또는 경영권과 연계시켜 부실기업 지원에 따른 이익을 경영주가 아닌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을 다시 회수하는 정책을 취했다. 스웨덴이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나선 지 3년만에 스웨덴의 경제지표는 정상을 되찾았고 이전보다 훨씬 튼튼한 금융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스웨덴의 금융위기는 어떻게 발생하고 진행되었는가. 스웨덴정부는 지난 85년 대출금리규제와 대출통제정책을 폐지하고 87년에는 외환시장규제도 폐지하는 등 전격적인 금융자유화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86년부터 4년 동안의 신규대출 규모가 81년부터 5년 동안 신규대출의 4배 수준까지 급증했고 외화차입은 9배 가까이 늘어났다. 당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은행들의 신규대출 중 대부분이 부동산 구입과 관련된 것이었다. 또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은행 담보가치의 상승을 유발했고 은행들은 시장점유율 확보 경쟁을 하면서 대출자의 신용도에 대한 평가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웬만한 기업이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고 대부분이 부동산을 담보로 한 경우였다. 그 동안의 대출 폭으로 80년대말에는 국내 신용의 급증으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가 폭증했고 90년에는 심각한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스웨덴 중앙은행은 금융기관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12% 이상으로 인상했고 금리가 높아지면서 자산가격이 떨어져 부동산 담보가치도 함께 폭락했다. 부동산가격의 거품이 빠지면서 부동산 대출에 의존했던 금융회사(finance company)들이 부실화되

기 시작했고 금융회사에 많은 자금을 대출하고 있던 은행의 부실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이때문에 금융기관이 안게된 부실채권은 총 대출금의 13.4%에 달했다. 주기는 폭락을 거듭해 85년의 절반수준으로 곤두박질쳤고 경상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4%를 넘어섰다. 91년 포스타스파은행이 먼저 부실화하면서 정부의 지급보증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지경에 몰린 데 이어 92년에는 자산규모 2위인 노드은행이 부실위기에 놓였다. 9월에는 4위업체인 고타은행이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는 등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이 급속도로 진행됐다.

금융시스템 붕괴의 위기에 몰린 스웨덴정부는 즉각적이고도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다. 스웨덴정부는 우선 부실채권 정리기구를 만들고 재정자금을 무제한적으로 쏟아부으면서 은행부실채권의 신속한 정리에 나서는 한편 전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선언했다. 스웨덴정부는 금융권의 부실규모가 금융권 내부의 유동성 조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상황 판단을 빨리했고 국내외 시장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주력했던 것이다. 스웨덴정부는 먼저 노드은행과 고타은행의 주식을 100% 매입해 국유화하는 한편 부실채권 처리회사인 세큐림과 레트리마를 새로 설립해 이들 두 은행의 부실채권을 인수·처리토록 했다. 노드은행과 고타은행의 경영이 정상궤도로 접어든 이후 스웨덴정부는 이 두 은행을 합병해 경쟁력 강화기반을 확보해줬다. 또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과 정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금융지원청(Bank Support Authority)을 설립했다. 금융지원청의 부실금융기관 지원은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을 위한 지급보증을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했다. 91년부터 93년까지 스웨덴이 부실금융기관을 구제하기 위해 쏟아부은 돈만 93년 GDP의 4.7%인 653억크로네(97억달러)에 달했고 이중 정부의 지원분은 605억크로네로

부실 금융기관 구제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실규모가 한국보다 훨씬 컸던 스웨덴이 금융위기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었던 근본적 요인은 정부가 금융권의 신뢰도 하락을 적극적으로 방어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는 금융기관 부실은 금융권 내부의 유동성 조절을 통해서도 해소에 한계가 있으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할 경우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3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고 이도 모자라 또 다시 20조원으로 증액을 하겠다는 한국정부의 경우처럼 불분명하고 유동적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수하고 전체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선언한 것도 금융권 내부와 기업, 외국 투자자들의 심리를 조기에 안정시키는 데 유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 다른 시사점은 정부가 충분한 재정지원은 하되 지원절차와 근거는 철저히 시장원리에 따랐다는 점이다. 스웨덴정부는 노드은행과 고타은행처럼 부실 정도가 심각한 은행은 주식 전량을 헐값에 사들여 국유화한 다음에야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자금을 지원할 때도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을 취했다. 결국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회생을 시키돼 회생 이후는 이에 따른 이익을 경영주가 아니라 정부가 확보한 것이다. 금융기관이 살아 날 수 있을 때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하되 이에 따른 이득은 다시 국민경제로 돌려 국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한 것이며 이같은 조치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도 해소한다. 또 사들인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시사점이 크다. 스웨덴정부는 부실채권정리기구의 경영진은 판료가 아닌 기업가, 금융가, 컨설턴트 등으로 구성하고 철저히 시장원리에 따라 부실채권을 사고 팔도록 했다. 덕분에 매입한 부실채권 금액의 87%를 되파는데 성공했고 당초 10~15년간은 계속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던 예상을 뒤엎고 이들 기관은 각각 5년

과 3년만에 깨끗이 임무를 마쳤다(『매일경제신문』, 1997. 12. 8.)

KDI에 의하면 현재 은행 및 증권사의 부실채권(32조원)은 국제기준을 적용할 때 약 48조원(총대출의 약 16%)규모로 추산되며, 향후 추가적인 기업 부도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 25조원(조달 방식: 재정자금 및 기금채권 발행), 은행증자 10조~15조원(재정자금 현물출자, 국내의 자본), 예금자보호기금 10조~12조원(기금채권발행 현물출자) 등 모두 45~52조원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이를 위한 재정자금 조달방안이다. 세출 감축에서 5~10조원, 6조원의 추가세입 확보, 공공기금 사업비 용자 축소 5~10조원, 공공기금 10~15조원을 공공채 인수자금으로 활용 등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나. 경제구조개혁

##### (1) 노동자 경영 참가와 재벌체제 해체

수많은 종업원과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무리한 차입으로 몸집 불리기에만 치달는 소수 재벌총수들에게 맡겨둘 수는 없다. 국가부도라는 경제위기를 초래하였으므로 재벌총수들은 더 이상 기업경영의 권한을 가져서는 안된다. 긴급명령을 통해서 부채상환을 동결하라는 재벌의 요구를 대통령에게 강청하는 정치권의 행태는 1972년 당시에 사채업자들에게나 통할 수 있었던 시대착오적 대응방식이다. 이것은 외국자본을 일부 떼어먹자는 것으로 구제금융을 제공할 IMF가 결코 용납하지 못한다.

재벌이란 비관련분야로 다각화된 산하기업들이 각 시장에서 독과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총수 일족이 이들 기업들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재벌의 본질은 소유 집중을 바탕으로 총수가 경영을 독점하는 것으로 경제독점체제라

고 할 수 있다.

재벌체제는 경제독재체제이다. 정치적 독재가 중국에는 비능률을 낳듯이 경제독재체제도 총수의 폭주를 견제할 장치가 없기 때문에 비효율을 낳게 된다. 북한의 기아사태도 정치경제적 독재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재벌체제를 사유재산권 보호와 자유시장경제의 명분으로 옹호할 수는 없다.

IMF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재벌의 개혁과 수술은 불가피하다. 지난 30년간 재벌이 한국 경제성장의 주역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지금의 국가경제위기를 부른 것도 재벌 탓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따른 폐해는 그동안 수없이 거론돼왔고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재벌의 강력한 반발과 로비에 부딪쳐 무산되고 말았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재벌의 독단적 기업지배구조와 선단식 경영체제, 과도한 차입경영은 더 이상 능률적이지도 않고 국민경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 스스로도 구조개선을 위한 비상한 자구노력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재벌에 모든 것을 맡겨놓을 수는 없다. 정부가 새로운 재벌정책을 내놓고 경쟁력이 떨어진 재벌의 기업구조를 과감히 개혁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서는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부당내부거래등으로 부실계열사를 무단 지원하는 관행에도 쐬기를 박아야 한다. 문어발식 경영과 빚더미 경영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오너 중심의 독단적 경영체제에 대한 견제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액주주의 권익보호와 경영 참가,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보장하는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재벌총수들이 수많은 노동자들과 국민경제를 위기에 빠뜨렸으므로 노동자들은 감원을 수용하기 이전에 회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경영인 체제,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결합제 무제표 작성 의무화, 사외이사제도 도입도 빼놓을 수 없다. 독과점적 시장 지배를 막기 위해 불공정 경쟁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재벌총수 일족의 소유경영 독점체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재벌체제 문제의 핵심은 총수 일족의 소유 집중에 있다. 문어발 업종 확장은 총수의 영향력 확대 요구에서 비롯되며, 총수의 경영독점도 계열회사 출자지분까지 포함한 소유집중 때문에 가능하다. 재벌대책은 총수일족의 소유집중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이다. 소유 집중의 해결방법으로서 상속세 증여세 강화, 세제개편 등 간접적인 방법은 실효성이 적다. 대부분의 재벌은 2세로 경영권이 승계된 상태이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재벌의 소유권과 경영권 상속을 위한 행태 등을 봐서도 그렇다. 재벌체제 해소는 산하 기업(은행 포함)에 대한 재벌가족 소유의 직접적인 소유분산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즉 '재벌해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벌 해체는 총수 일족의 소유 경영지배와 다각적 경영을 해소하고 독립전문경영의 대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재벌의 구조적 모순과 폐해가 제거되지 않고는 국민경제의 회생은 기대할 수 없다. 한국도 이제는 재벌에게 총체적 경제위기를 초래해 국가를 법정관리로 몰아넣은 책임을 물어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할 역사적 순간이 왔다.

### (2) 금융기관 경영의 효율화

관료들과 재벌들이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구조를 청산하고 금융기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을 민주화·자율화하는 것은 금융기관을 민영화(재벌소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국민기업화하면서 전문경영인이 자율적으로 경영하도록 하는 진정한 민주화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민

주적 통제와 계획적 운용은 대단히 중요하다. 금융기관은 국민들과 기업의 저축과 정부의 재정자금을 기초로 자본의 배분 역할을 맡는 중요한 기관으로 재벌의 사적 소유와 지배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통화 증발로 경제가 불안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금융실명제는 금융민주화의 출발점으로서 내용을 가져야 한다. 차명을 허용하지 않는 등 더욱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 (3) 부정부패, 정경유착 척결

관료적 경제 지배를 철폐해야 한다. 관료적 경제지배체제는 일제 하에서 형성된 체제로서 박정희 정권에 의하여 강화되었고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관료에 의한 경제발전 주도는 초기 경제발전과정에서는 일정한 기여를 했지만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단계에 도달했고 분업이 심화된 현재의 경제여건에는 더 이상 맞지 않게 되었다.

재정개혁을 통하여 직접세 중심의 조세수입체제를 갖추고 재산소득세의 포착율을 높이도록 하고, 세출에서는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감사원을 대통령까지도 감사할 수 있도록 국회 직할로 두는 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금융민주화도 관료적 경제지배 철폐의 일환이다. 부정부패방지법·돈세탁방지법 등도 제정되어야 한다.

### (4) 종합토지세 강화에 의한 자원 마련

토지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토지문제 해결의 길은 막연한 토지공개념의 도입 대신에 국공유지 면적비율을 높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재산보유세와 양도세의 실효세율을 대폭 높여야 한다. 현재 종합토지세율은 공시지가의 0.15% 수준인데 이것을 1%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이렇게 할 10조원 이상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이 새로운 재원은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와 실업자 보호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동시에 지가 상승의 기본적 요인인 기존 토지와 주택소유의 수익율을 억제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임차료 인상 억제 및 장기간 임차를 보장하는 임차인 보호조치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조세를 통한 재산소득의 환수는 이러한 임차인 보호가 없으면 조세부담의 전가를 통해 문제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 나.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강화

실업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노동의욕을 회복하도록 하는 출발점이다. 부정부패의 척결을 통한 음성수입의 봉쇄는 노동인력이 생산적으로 가도록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경제는 이미 노동력이 과잉이었던 외연적 성장의 시기를 지나 내포적 성장의 단계, 노동력 부족시대로 진입하였는데도 이에 대응한 노자관계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졌다. 노동운동은 우리 경제의 불균형을 단기간에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이므로 보호되어야 한다.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고용불안에 대처하여서는 첫째,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회사경영의 심각한 악화 등 인건비의 대폭 절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량 감원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자들끼리의 고용분담이 더 나은 방향이다. 셋째, 실업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당장의 과제로서 퇴직금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하여 도산업체가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서 고용보험제를 확충해야 한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종합토지세율의 인상, 국방비 대폭절감 등을 통하여 조달될 수 있다.

## 다. 투기적 자본이동의 규제

투기적 자본이동이 외환위기를 증폭시켰으므로 앞으로 투기적 자본이동을 적절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 방법으로는 외환거래세나 외환시세차익세를 부과하는 것이 있다. 정부에서도 12월 8일 자본시장 대 폭 개방에 따른 핫머니 유입에 대비해 비상조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환거래세(거래액의 일정률 과세)나 토빈세(외환시세차익에 과세)<sup>7)</sup>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한국경제신문』, 1997. 12. 9.).

자본자유화에 성공한 칠레의 경우 지난 91년 핫머니의 유입을 막기 위해 토빈세(Tobin Tax) 제도를 도입해 외환거래세를 부과하고 유입자금의 30%를 중앙은행에 무이자로 예치하도록 했다. 또한 외화대출에 대해 연 1.2%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직접투자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유입자본 중 단기 수익을 노리는 포트폴리오 투자는 91년 2억달러와 92년 4억달러에서 95년에는 3천만달러로 크게 줄었

7) 20여년 전 미국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은 단기성 투기자금의 이동을 억제하고 각국 정부가 통화정책에 대한 재량권을 강화하기 위해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다시 최근 관심을 끄는 것은 세계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외환시장의 하루 거래규모는 1조2천억달러로서 전세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와 맞먹는 수치이다. 외환시장에서 최근 몇년간 세계 중앙은행들은 환투기를 막는 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94년의 멕시코 폐소화 폭락사태의 경우가 그 사례였다. 이같은 사태를 지켜본 정책입안가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외환시장의 교란을 막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에 조절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토빈세론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토빈세의 찬성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해서 투기성 단기자본의 이동을 억제하면 외환시장이 한층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둘째, 모든 외환거래에 0.1%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과세에 따른 거래량 감소분을 제하고도 매년 약 1,500달러의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러나 토빈세 비판론자들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다. 모든 국가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한 외환거래는 비파세지역에 몰리게 될 것이고 금융전문가들은 간접거래에 의한 스와프방식을 고안하는 등 과세를 회피할 묘수를 짜낼 것이라는 것이다. 토빈세 옹호주의자들은 이에 맞서 모든 외환거래내역을 기록, 탈세를 방지할 수 있으며, 세금을 충분히 낮게 책정하면 과세를 회피하려는 동기를 낮출 수 있다고 반박한다.

외환시장이 항상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이다. 첫째, 투자자들은 외환시장의 현주세가 3개월간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거래한다. 환거래가 이같은 단기전망에 의해 지배될 때 투기는 자본의 흐름을 확산시켜 급격한 환율변동을 초래하거나 고정환율제일 경우 현행환율에 커다란 압력을 가하게 된다. 둘째, 환투기꾼들은 정부가 자국의 통화가 불안정할 경우 금리를 변화시켜 환율을 조정하는 방어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정부는 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개입을 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필요 이상의 차관을 해외로부터 조달, 부가적인 급격한 자본 유입이 초래된다.

토빈이 지적하듯이 매거래당 0.1%의 세금이 부과될 경우 매일 거래되는 단기성 자금의 입장에서 볼 때 1년간 48%에 해당하는 과세부담이 생긴다. 그러나 무역거래나 장기투자자본과 같은 거래비용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외환시장 교란의 주범이 단기성 자본이동이며 장기 자본이동이 매우 안정적이라면 토빈세는 외환시장을 효율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토빈세 지지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첫째, 환투기꾼들이 반드시 일일투기를 노리는 부류와 장기적인 이익을 목표로 하는 집단으로 이분화되지는 않으며 대개가 자본시장의 움직임에 관심과 식견을 가진 거래자들이다. 둘째, 토빈의 주장처럼 토빈세로 인해 통화정책 결정에 행사할 수 있는 정부의 재량권이 그렇게 커지지 않을 수도 있다. 셋째, 유럽통화제도의 환율메카니즘(ERM)을 교란시켰던 환투기꾼들은 토빈세가 부과될 경우 조성할 수 있는 자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90년대 초와 94년 말의 멕시코 폐소화 위기를 초래했던 투기꾼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넷째, 통화위기가 항상 투기꾼들에 의해 초래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허술한 통화정책과 같은 정책상의 과실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한국경제신문』, 1996. 7. 23.).

으며 직접투자는 93년 8억달러, 94년 18억달러, 95년 17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이에 반해 멕시코는 지난 87년부터 부족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무리한 고금리·고폐소화 정책을 폈으며 투기성 단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했다. 그 결과 걸으로는 물가안정, 정부 재정수지 흑자 전환 등 안정화를 이루었지만 유입자본 중 포트폴리오 투자가 91년 127억달러, 92년 180억달러, 93년에는 289억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94년말 국제외환시장에서 폐소화가 폭락하고 95년에는 무려 101억달러가 국외로 빠져나가는 금융공황이 발생했다(『서울경제신문』 96. 11. 28.)

## 다.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역할 강화

이제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적 모순을 본격적으로 체험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IMF구제금융사태는 박정희정권이 구축한 국가주도, 재벌육성, 노동자민중 희생의 경제적 재생산 메카니즘이 경제의 개방화와 선진국의 견제, 후진국의 추격 등에 직면하여 파탄한 것을 의미한다. 이제 새로운 민주적이고 복지를 우선시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만 생산에 종사하는 다수 노동자들의 노동의욕과 중소기업경영자들의 기업가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다.

재벌에 대해서 합리적인 축적기반을 마련해주려는 정부는 IMF구제금융이라는 사태를 맞이하면서도 결코 진정한 경제개혁을 추진할 수 없다. 경제개혁과 재벌 해체의 원동력은 다수 국민을 이루는 민중의 정치적 힘이 있다. 최선의 경우는 다수 국민의 지지에 기초한 민주정부가 재벌해체와 경제구조개혁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민중의 정치적 힘이 성장하여 기존지배세력을 위협할 정도가 되어야 지배세력 내지 집권세력은 어쩔 수 없이 재벌해체를 비롯한 경제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일본에서

전후에 재벌해체를 한 것은 미국의 주도로 일본의 침략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진정한 경제개혁과 재벌 해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산별노조의 건설과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정당의 건설이 필요하다. 민주적 노동운동은 국민들 앞에 책임있고, 능력있는 주체로 등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해나가야 하는데 여기에는 정당이 있어야 한다.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정당을 구축해야 한다.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승리21'이 권영길 후보를 낸 것은 그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이제 근본적으로 변화된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의 정당들은 이념과 정책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수구와 급진, 보수와 개혁 등 자신의 주장과 신념으로 정당을 선택하고 이러한 참여를 기초로 정당들을 육성해나가야 한다. 각 계급별로 참여, 지지할 정당이 있어야 한다. 자본가계급의 보수정당과 노동자계급의 진보적 정당이 정립되어야 한다.

노동조합연합조직이나 향후 건설될 정당 내에 '경제개혁과 재벌해체투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제개혁과 재벌해체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한다. 시민운동과 차별되어지는 노동자계급의 고유한 반재벌투쟁으로서 재벌해체투쟁을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한다. 나아가서 노동조합이 주축이 되어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경제개혁과 재벌해체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활동하도록 한다.

## 참고: 멕시코의 사례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응급구제로 부도는 모면했지만 멕시코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에 인플레이가 두자리수로 다시 치솟는 상처를 입고 그 후유증을 1년 후까지 앓았다. 폐소화 가치는 달러당 8페소선에

서 하락행진이 멈췄고 주식값은 폭락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지원한 500억달러의 긴급 구제금융 덕분에 지급불능이란 파산 위기에선 일단 벗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물경제쪽의 후유증은 심각했다. 구제금융의 대가로 미국에 약속한 초긴축정책에 따라 멕시코의 실질금리는 50%를 넘나들었다. 중소기업의 도산이 계속되면서 150만명을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물가상승률이 무려 50%를 넘으면서 국민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허덕였다. 95년 멕시코의 경제성장은 마이너스 7%선으로 곤두박질쳤다.

96년에 들어와 사태는 다소 호전되어 경제성장률 3%, 물가상승률 20%로 되었다. 무역수지규모가 94년 185억달러 적자에서 95년에는 62억달러 흑자로 반전되었다. 수출 증가는 경제침체의 주범인 '폐소화 폭락'에서 비롯한 것으로 멕시코상품이 해외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또 화폐가치 폭락이 수입상품의 가격을 앙등시켜 서민들은 외제상품을 구매할 엄두조차 못 내게 됐고 이것이 수입격감을 초래한 것이다. 경상수지 개선에 따라 외환보유액도 1994년말 61억달러에서 1997년 2월말 현재 207억달러로 대폭 증가했다. 세계의 주요 예측기관들은 멕시코 경제가 1997~98년중에도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상승률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와 같이 1996년 이래 멕시코의 경제상황이 뚜렷이 호전되고 있는 것은 경제안정화 및 구조조정, 금융산업의 안정성 회복 등을 위해 멕시코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경제정책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한국은행, 「최근 멕시코의 경제회복과 시사점」, 1997. 4.).

첫째, 강력한 경제안정화정책 추진이다. 멕시코 정부는 폐소화 폭락사태로 야기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995년 3월부터 강력한 재정 및 금융 부문

의 긴축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경제안정화대책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1995년 10월에는 기업 및 노동계와의 합의를 거쳐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임금 및 물가인상 억제 등을 포함한 경제회생방안(Agreement for Economic Recovery)을 마련하여 시행했다. 재정정책면에서는 세출을 줄이고 세수를 확대하는 등 긴축적인 운용으로 재정의 건전화 노력을 강화했다. 통화정책도 물가안정기조 회복을 위해 국내신용 증가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긴축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통화정책의 일관성 여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표했다. 아울러 전체 임금상승률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억제하는 등 소득정책(income policy)을 실시했다. 한편 국민들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소비지출을 줄이는 등 정부의 경제안정화정책에 적극 협력했다.

둘째, 대외개방 및 구조조정 정책의 지속 추진이다. 멕시코 정부는 폐소화 위기 이후에도 그동안 실시해온 무역자유화 등 대외개방정책과 국영기업 민영화, 한계기업 정리 및 기업의 대형화 유도 등 구조조정 정책을 계속 추진했다. 1995~96년중에도 운송, 통신, 석유화학 부문 등의 민영화를 단행함으로써 대부분의 국영기업을 민영화하였으며 한계기업 정리 및 기업의 대형화 유도를 위해 1995년부터 기업의 합병 또는 분리시 소득세를 면제했다.

셋째,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이다. 폐소화 폭락사태 이후 금융기관의 경영여건 및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금융공황이 우려되자 멕시코정부와 중앙은행은 '포괄적 금융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했다.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적립 하한선을 설정하여 운용하는 한편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상업은행에 대해 후순위채를 발행하게 하고 이를 '예금보장기금'에서 매입토록 함으로써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였다. 외채상환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예금보장기금을 통해 상업은행에 '단기 달러화자금'을 제공하고 부실은행 대

책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은행소유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와 함께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회계기준, 신용평가 및 리스크관리 등에 대한 감독도 강화했다.

넷째, 폐소화의 점진적인 질하 유도. 멕시코 중앙은행은 외국인투자 촉진등을 위한 인위적인 환율지지가 폐소화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인식 하에 외환시장 개입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폐소화의 점진적인 가치 하락을 용인했다. 변동환율제도를 고수하는 가운데 안정 위주의 일관성 있는 통화정책을 운용하여 폐소화 환율의 점진적 안정 및 실세화를 유도했다.

다섯째, 국제적 자금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멕시코는 폐소화 위기 이후 IMF등 국제금융기구 및 미국정부로부터의 자금지원과 미 연준(FRB), 캐나다 중앙은행등과의 단기 SWAP거래 등을 통해 외환보유액을 늘림으로써 대외신인도를 제고하여 빠른 기간 내에 국제자본시장에 복귀할 수 있었다.

여섯째, 정치·사회적 안정이다. 멕시코정부는 국가개발계획의 수립 시행, 경제안정화정책에 대한 기업 및 노동계의 협력 유도, 선거법 개정 합의 등을 통

해 정치 사회적 안정을 도모했다.

### 참고문헌

박병규, 1995. 「금융국제화와 국제금융의 주기적 위기」, 『월간 흐름』 1995년 2월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박복영, 1994. 「1980년대 이후 자본의 국제화와 국제적 경제조절」, 『국제화와 한국사회』, 나남출판  
 장상환, 1996. 「최근의 경제위기와 한국자본주의의 변화」, 『산업경제』 제6집.  
 Paul Krugman, 1994. "The Mi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November \December.  
 Paul Krugman, 1995. "Dutch Tulips and Emerging Markets", Foreign Affairs, July/August.

멕시코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단위: %, 억달러)

	1993	1994	1995				1996				1997		
			연간	I	II	III	IV	연간	I	II		III	IV
GDP성장률 <sup>1)</sup>	0.6	3.5	-6.2	-0.8	-10.5	-9.6	-6.6	5.1	-1.0	6.4	7.0	7.6	-
총투자	3.0	8.4	-29.1	-19.5	-35.3	-32.	-29.1	18.1	-2.1	18.3	27.5	8.8	-
총수출	3.5	17.4	36.4	33.3	34.8	40.5	37.0	18.6	16.7	18.6	18.7	20.5	-
경 상 수 지	-234	-297	-16	-13	3	-5	-1	-18	-1	5	-8	-14	-
소비자물가상승률 <sup>2)</sup>	9.8	7.0	35.0	15.0	33.8	41.7	48.7	34.4	48.0	34.1	30.5	28.1	26.0
국제수익률 <sup>3)</sup>	15.0	14.1	48.4	49.5	60.4	36.5	47.4	31.4	40.3	30.5	27.2	27.5	21.7
환율(페소/달러) <sup>4)</sup>	3.12	3.38	6.42	5.97	6.16	6.21	7.34	7.60	7.53	7.48	7.56	7.83	7.81
외환보유액 <sup>5)</sup>	245	61	157	68	101	147	157	176	155	154	156	176	207
주가지수 <sup>6)</sup>	2,603	2,376	2,929	1,833	2,196	2,382	2,929	3,361	3,073	3,211	3,236	3,361	3,748

주: 1) 전년동기대비 2) 28일 만기 cetes, 기간평균 기준 3) 기간평균 기준  
 4) 1987=100, 기말 기준 5) 소비자물가, 국제수익률, 환율은 1~2월중, 외환보유액은 2월말, 주가지수는 3월말 기준  
 자료: Bank of Mexico  
 한국은행, 「최근 멕시코의 경제회복과 시사점」, 1997. 4에서 재인용.

# 개정 노동법과 산별노조

최원식

## 1. 들어가는 말

1987.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운동계에서는 산별노조 건설이 최대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1987. 개정된 노동법상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지역노조나 산별노조 등 어떠한 형태의 노조도 설립할 수 있으나, 다만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의해 산별노조의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1997. 노동법 개정으로 복수노조금지조항이 철폐되었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만 한다)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2001. 12. 31.까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 그 노조와 조직대상을 중복하는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없어 현재 산별노조를 건설할 경우에도 역시 기존 기업별노조와의 조직대상 중복문제가 대두된다.

여기에서는 개정노동법 하에서 산별노조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법률적인 제반문제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 2. 산별노조란?

### 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 직능별노조: 특수한 기능이나 직능의 소지자, 특

정 직종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혁명 이후부터 19세기 말까지 즉 독점자본주의가 확립되기 전인 산업자본주의 단계에 발전되었으며 기계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반숙련, 비숙련공이 대거 등장하면서 쇠퇴하였다. 현재는 영국과 미국에 그 잔재가 미미하게 남아 있다.

- 산업별노조: 고용조건, 직종, 지역 등 일체의 구분 없이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19세기 말부터 독점자본주의단계로 전환되는 시점에 출범하였다.

- 일반 합동노조: 직종별, 산업별을 불문하고 근로자 일반을 조직하는 노조로서 개방적이고 대중적인 성격이 그 특성이며, 영국의 최대조합인 운수, 일반노동조합(TGWU)이 대표적인 예이다.

- 기업별노조: 개별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정규직 노동자)만이 대상이 된다. 대체적으로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에 조응하여 직능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발전하여왔으나 기업별노조는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특수한 형태이다.

### 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후에는 산별노조연합체인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과 기업별노조연합체인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대한노총)이 대립되다가 미군정에 의하여 전평이 파괴된 후, 대한노총이 존속하였고, 4.19와 5.16 이후 산별노조체제인 한국노총으로 되었다가

106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 1월호

5.17 이후 다시 기업별노조체제로 강제되었으며, 1987. 노동자대투쟁 이후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산별노조체제로의 전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평이 붕괴된 후 권력에 의하여 기업별노조, 산별노조, 다시 기업별노조가 강제되어 현장조직의 근간에는 기업별노조형태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산별노조 건설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장에 자리잡은 기업별노조의 뿌리깊은 관행을 어떻게 변화시키는데에 있다.

### 다. 산별노조의 특징

#### (1) 조직대상(주체)

산별노조는 기업이나 업종, 직종, 지역을 불문하고 동일한 산업에 종사하고 임금으로 생활하는 모든 노동자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특정기업에 종

사하는 정규직은 물론이고, 실업자, 임시직, 파견직, 퇴직자까지도 조직할 수 있다.

#### (2) 조직구조

산별노조는 단일한 전국조직으로서 중앙집중적인 구조를 취한다. 산별노조에는 통상 산하의 각급 조직들을 통괄하고 지도하는 전국본부, 전국본부의 지휘와 방침에 따라 지역단위의 단체교섭 및 기타 노조활동을 수행하는 지역조직, 개별기업이나 공장단위조직인 현장조직이 있다.

산별노조는 단일조직이므로 스스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 (3)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당연히 산별노조가 단체교섭권과 노동쟁의권의 주체이다.

#### (4)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의 비교

비교	산별노조	기업별노조
조합원 범위	- 직종, 기업, 숙련 여부에 관계 없음 - 동일산업 내 모든 노동자 - 실업자, 예비노동자, 퇴직자도 가입 가능	- 특정기업에 소속된 노동자 - 정규 종업원에 한정 - 임시직, 파견직, 시간제 노동자 제외
조직 형태	- 횡단조직 - 기업 외부조직	- 종단조직 - 기업 내부조직
자주성	- 사용자와 정부의 개입 배제 - 사용자와 정부에 대해 대등관계	- 사용자와 정부의 개입 용이 - 사용자에 대해 종속적
민주성	- 조합 운영의 관료화 가능성 - 지도부와 현장조직 유리 가능성 - 간접민주주의	- 조합 내 민주주의 관철 용이 - 직접민주주의
단체교섭	- 통일교섭 - 조직의 통일, 투쟁의 통일, 노동조건 통일	- 기업별 교섭 - 분산적
임금과 노동조건	- 노동조건 통일 - 임금제도 개선	- 기업경영상태에 따른 임금과 노동조건 - 격차 확대
단체행동	- 사용자단체, 정부와의 투쟁 가능 - 강한 사회적 파급력	- 정부와의 투쟁 불가능 - 미미한 영향력
정치·사회적 영향력	- 강한 영향력 - 적극적인 정치 참여 가능	- 미미한 영향력 - 정치 참여 어려움
의식	- 건전한 노동자의식	- 종업원의식

(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 『산별노조의 이론과 실제』, 33면)

107 노동위원회의 발제문

단체교섭의 형태에서는 기업별 교섭(기업별노조 체제에서의 단위기업노조와 사용자 간의 교섭)뿐 아니라 통일교섭(전국단위 노동조합과 전국 사용자단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섭), 집단교섭(전국단위 노동조합이나 다수의 기업별노조가 다수의 사용자를 상대로 하는 교섭), 공동교섭(전국단위 노동조합이 기업단위의 노조조직과 함께 개별사용자와 하는 교섭), 대각선교섭(전국단위 노동조합과 개별기업 사용자 간의 교섭)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산별노조에서는 산업별 통일교섭이 가장 중요한 교섭형태이다.

### 3. 산별노조의 요건에서 제기되는 문제

개정노조법 제10조 2항에는 산별노조를 '전국 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산별노조를 건설할 경우 그 요건에 있어 ① 전국규모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② 동종산업이란 어떠한 범위인지 ③ 복수노조설립금지조항과 관련된 기존 기업별노조와의 조직대상 중복문제 ④ 가입노동자의 자격 범위문제 등이 거론될 수 있다.

#### 가. 전국규모의 기준문제

전국규모의 기준이 되는 법규정은 없다. 과거 노동부는 일정 이상의 인원과 일정 정도 이상의 지역을 포괄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누3243판결에서도 서울, 성남, 수원, 인천, 전주 등에 있는 36명의 요식업소 근로자가 결성한 전국요식업노동조합은 산업별단위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노동부가 1997. 4. 서울지역에 분포된 전국시설노동조합연맹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이후, 인원이나 지역이 일정 정도 포괄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는 것 같지는 않다.

나. 동종산업이란 어떠한 범위를 말하는 것인지

동종산업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정도 없다. 산업은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순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나,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주적 단결권의 원칙에 따라 동종산업의 범위는 노동자 스스로가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노동부가 노조설립신고에 대한 보완명령이나 반력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노조법 1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동종산업의 범위 문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기존 기업별 단위노조와의 조직대상 중복문제

개정 노조법 부칙 제5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1997. 6.에 발간한 「알기 쉬운 새노동법 해설」 44쪽에서 '단위노조, 지부, 분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라고 함으로써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기업별, 직종별, 지역별, 산업별을 불문하고 그리고 노조의 조직형태(단위노조, 지부, 분회 등)를 불문하고 조직대상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약에 "본노조의 가입대상 중 이미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그 노조가 해산되거나 조직형태를 본노조의 산하조직으로 변경할 때까지는 본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라. 가입노동자의 자격

특정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노동자 즉 실업노동자, 자유직종노동자, 해고자, 정년퇴직자들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가? 나아가 산별노조 임원의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노동부에서는 특정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자는 노조를 조직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 5. 23. 선고 90누9438)와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 단 해고자가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노위 재심판정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라는 규정은 조합원이 특정기업의 노동자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업노동자, 자유직종노동자, 해고자, 정년퇴직자 등의 조합원 자격과 산별노조의 임원자격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산별노조란 개념의 본질상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실업노동자, 자유직종노동자, 해고자, 정년퇴직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여왔고, 우리 헌법은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조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도 불구하고 임금, 급여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조법 제10조 제2항에서 기업별노조를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는 별도로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업노동자, 자유직종노동자, 해고자, 정년퇴직자 등의 조합원의 자격과 산별노조 임원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단결권과 산별노조의 본질을 침해하는 해석이라 아니할 수 없다.

먼저 노조법 제10조 제2항에서 산별노조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은 기업별노조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마땅하다. 기업별노조와 산별노조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규정을 정리하지 못한 입법상의 실수인 것이다.

다음으로 앞서 본 대법원 판례는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회사와의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가 있다

할 수 없어 위 회사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기존의 노동조합은 적어도 위 회사 내지 원고 조합(후에 설립 신고한 조합으로서 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들로서 구성됨)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적법한 노동조합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특정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특정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그 특정사용자 및 그 특정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대하여 적법한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덧붙이면 노동부는 특정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다수의 연예인 노동자로 구성된 전국연예인노조 및 킥서비스노조에게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은 바 없다.

가입 범위문제는 산별노조의 본질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 4. 산별노조의 설립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

우리나라 노조들은 기업별노조형태를 취하여 왔기에 산별노조로 조직을 전환하려면 일종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이에선 신규설립, 합병, 조직형태 변경의 방법이 있다.

#### 가. 신규설립

미조직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주축이라면 창립총회를 통해 신규노조를 설립하는 것이 간편할 것이다. 이 경우 조직대상 중 이미 만들어져 있는 단위노조가 새로 만들어지는 전국적 산별노조 결성에 참가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 (1) 산별노조 설립 후 기존 단위노조의 조직형태 변경

전국적 산별노조가 설립된 후 해당 단위노조의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조직형태 변경 의결을 하여 산별노조의 분회로 가입하면 된다. 기존의 기업별 단위노조를 해산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문제삼을 수도 있으므로 산별노조 규약 부칙에 "00산업의 노동자 중 이미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그 노조가 해산되거나 조직형태를 본노조의 산하조직으로 변경할 때까지는 본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개정된 노조법 제16조에 총회 의결사항으로 조직형태 변경이 추가되었으므로, 기업별 단위노조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조직형태를 단위노조인 '000노동조합'에서 지역노조의 산하조직인 'XXX노동조합 000분회'로 변경하는 결의와 함께 규약변경 결의도 해야 한다. 변경되어야 할 규약의 주요 내용은 조직명, 회의와 기관의 명칭과 기능, 임원의 명칭과 권한, 교섭권과 쟁의권 등이다. 분회 임원의 경우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새로 선출하지 않고 기존의 임원이 임기까지 역할을 수행하여도 무방하다.

조직형태 변경이 이루어지면 설립신고사항의 변경신고와 규약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2) 기존 단위노조의 조건부해산 후 산별노조 건설

앞의 방법은 기존의 단위노조가 지역노조나 전국적 산별노조 설립과정에 공식적으로 참가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기존노조가 지역노조나 전국적 산별노조 설립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는 노조를 해산하면 된다. 그런데 노조를 해산하면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무노조상태가 발생하므로 조건부 해산이라는 방식을 쓸 수 있다. 조건부 해산을 한 상태에서

는 그 노조의 조합원들이 지역노조나 전국적 산별노조의 창립총회에 참가하고 임원을 맡을 수 있다. 조건부 해산은 기존의 기업별노조를 산별노조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무노조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산 및 규약변경의 효력은 00산별노조가 적법하게 설립되는 시점부터 발생한다"는 조건을 달아 해산을 하는 것이다. 조건부 해산의 경우도 해산이므로 당연히 규약상의 해산의결정족수를 따라야 한다.

1994. 9. 5. 과기노조는 이러한 조건부 해산 절차를 통해 산별노조의 설립신고증을 받은 바 있다. 과기노조의 설립에 있어 조건부 해산도 일종의 해산이므로 기존의 단체협약은 무효로 되고 전임자는 원직 복직하여야 하며 조합원 가입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사용자측의 질의가 있었으나, 노동부는 기존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지속되고 조합원 가입원서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회시하였다.

### 나. 단위노조의 합병에 의한 지역노조 및 전국적 산별노조의 설립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업별 단위노조가 주축이 되어 지역별 단위노조를 만들거나,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업별·지역별·전국적 단위노조가 주축이 되어 전국적 산별노조를 만드는 경우는 노조의 합병절차를 거치면 된다. 합병은 각 단위노조가 일정기간 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통해 합병결의를 한 후 통합대의원회를 열어 규약제정과 임원선출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 방식은 산별연맹 소속의 모든 단위노조가 일시에 산별노조에 참가할 수 없는 조건에서 산별노조를 설립해야만 할 때 적합하다. 다음에서 설명할 연합단체의 조직형태 변경에 의한 산별노조 설립의 경우 연맹 소속의 단위노조 중 조직 내부사정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없는 노조는 산별연맹이 없으므로 상

급단체 미가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는 연합단체를 해소하고 산별노조로 전환하기보다는 연합단체를 한시적으로 유지하면서 연맹 내의 주요 단위노조들이 합병의 방법으로 산별노조를 먼저 만든 후 나머지 노조들을 가입시키는 방법이다.

합병의결은 구 노동조합법에서는 일반의결정족수였으나 개정 노조법에서는 특별의결정족수이므로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 다. 산별연맹의 조직형태 변경

산별연맹체계를 갖추고 있는 지금의 조건으로 볼 때 가장 실현가능한 산별노조 건설 방안은 연합단체를 전국적 산업별 단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방법이다. 산별연맹은 산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 연맹소속의 단위노조는 산별노조의 지부, 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면 된다.

### 라. 단일체로의 합동

개별노동자들만으로 산별노조가 설립되는 것을 제외하고 단위노조가 산별노조설립과정에 가담하는 것은 조직형태 변경이나 가입의 절차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일체로의 합동이다.

이 경우 구단위조합과 신지부 사이에는 조직 실체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조합이 권리 의무의 주체로 되는 제관계(조합재산, 조합사무소의 사용대차 등)에는 변동이 없다. 다만 산별노조 조합원, 지부조합원의 2중성격을 갖는 조합원이 관계되는 문제, 전형적으로 단체협약에 관하여는 경합문제가 발생한다. 산별노조의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단체협약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 마. 조직분열과 조합재산

산별노조 건설에 있어 단위노조나 산별연맹 내부에서 의견의 차이로 조직이 분열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조직분열의 경우 잔류조합원에게 조합재산이 귀속된다는 설과 분열된 복수조합 간에 상응하여 분할된다는 설이 대립하나, 산별노조 건설에 있어 의견의 차로 분열하는 경우에는 후설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 5. 기타의 문제

### 가. 단체교섭 상대방의 문제

산별노조는 기업을 넘어서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교섭력을 생명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업별노조의 관행이 뿌리깊어서 산별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누구냐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노조법 제2조 제3호에는 '사용자단체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단체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또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들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79.12.28. 선고 79누 116호)고 하여 엄격히 해석하고 있고, '지역의 원예협동조합이 청과물위판장을 설치, 운영하고는 있으나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소의 노동조합에서 임의로 선발되어 파견되고 그 노동조합원인 연락소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으며 노임도 각 하주로부터 직접 받고 있을 뿐이고, 위 원예협동조합은 단지 위판장 내에서



# 병원노련 산별노조 건설 현황<sup>1)</sup>

강 영 삼(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조직부장)

## 1. 공동투쟁에서 산별노조로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병원노련)이 산별노조 건설을 당면 목표로 잡고 구체적인 조직건설 노력을 시작한 계기는 1993년 5월의 대법원의 병원노련 합법화 판결로부터 주어진다. 법외조직에서 합법연맹으로 바뀐 병원노련은 그 이듬해인 1994년, 합법연맹의 법적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산별노조 건설에 한발 다가가기 위하여 '교섭권 위임을 통한 공동교섭 전술방침'을 확정하였다. 이 방침에 따라 서울지역본부, 인부천본부, 지방공사의료원노조협의회 등 3개 지역·특성조직<sup>2)</sup>이 '94 공동임단투에 돌입하였다.

'교섭권 위임을 통한 공동교섭 전술방침'은 94년 첫 시도 이래 상당한 조직적 성과를 가져왔다. 강화된 교섭력과 높은 요구안 쟁취도, 활발한 일상활동에 기초한 조직력의 상향평준화, 투쟁전술의 다양화, 연대투쟁의 질적 변화 등이 그 성과들이었다. 공동교섭 공동투쟁은 이러한 성과에 바탕하여 나머지 지역본부로 확산되었고, 그 성과는 한편 96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노동법개정 총파업 투쟁에서 병원노련이 공공부문 투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데 상당한 밑받침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

병원노련의 산별노의는 94년 일부 지역본부에서 시범적으로 진행된 교섭권 위임을 통한 공동교섭이 성과를 가져오면서 시작되었다. 94년 하반기 병원노련은 위원장 직속으로 산별노조 연구소위원회(이하 연구소위)를 설치하고 개괄적인 산별노조 건설방향과 경로 등을 논의하였다. 연구소위는 외국 산별노조, 과기노조 등 국내 산별노조 건설 사례, 병원노조의 역사와 조직의 특성 등을 검토한 끝에 95년 연맹 중앙위원회에 산별노조 건설 계획을 작성·제출하였다.

당시 건설 계획의 골자는 지역단일노조를 거쳐 전국산별노조 건설로 나아간다는 것이었다. 공동교섭을 양적으로 확대발전시키면서 그 성과를 모아 지역별로 단일노조로 나아가고(1단계), 산별노조를 건설할 수 있을 정도의 주체동력이 모아졌을 때 지역별단일노조를 해산하면서 전국단위의 산별노조를 건설한

1) 이 글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발간 『노동사회』 97년 11월호에 기고했던 글이다.  
2) 병원노련은 1997년 현재 150여개 노동조합, 3만 5천여명의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으며 조직이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조직으로는 10개 지역본부를 두고 있다. 그 외에도 지방공사의료원 노조들은 별도의 협의회(지방공사의료원노조협의회, 지의노협)를 구성하고 있으며, 가톨릭의료원노조는 여러 지역에 걸친 사업장들이 하나의 노조로 구성되어 있어 별도의 조직체로 되어 있다. 지의노협과 가톨릭의료원노조를 지역본부와 구분하여 특성조직이라 한다.  
3) 물론 당시에도 모든 지역본부를 지역단일노조로 만든 후에야 전국산별노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었다. 몇 개 지역에서 지역단일노조가 만들어지고 다른 지역에서 공동교섭의 성과가 모아지면 이들을 중심으로 하면서 나머지 조직은 이에 합류시켜 전국산별노조를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행해지는 작업 내용과 노임액을 균등화하여 노임에 관한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위 연락소장과 노임에 관한 협의를 하는 데 불과하다면 이는 노동조합법 제 33조 제1항의 사용자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누856호)라고 판시하고 있다.

사업자에 대해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막연한 감은 있으나, 각 산업별 사용자단체(자동차공업협회, 조선공업협회 등)의 회칙이나 정관에서 조정 또는 규제권이라고 해석되는 부분을 찾아서 교섭의 상대방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노조법 제30조에는 사용자단체의 성실교섭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나.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산별노조의 경우 해당산업의 종사자 전부를 조합원으로 포괄하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은 일정지역 또는 전국에 걸쳐 지역적 구속력을 갖을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노조조직률은 1995년 현재 35%정도이지만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전체노동자비율은 90%에 이르고 있다.

노조법 제36조에는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을 규정하고 있는바, 산별노조의 출현으로 이 조항은 활성화되리라 믿는다.

다는 것이었다(2단계).<sup>3)</sup> 요컨대 공동교섭을 지역별로 확대·강화시켜 나가면 그 결과 산별노조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당시 지역본부단위의 공동교섭 결과가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던 당시의 분위기로 보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1995년 상반기 병원노련은 공동교섭, 공동투쟁을 5개 지역·특성조직<sup>4)</sup>으로 확대시켰다. 그 결과 전국투쟁이 연맹의 지도 하에 집중되기 보다는 지역별로 분산, 개별화하는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요컨대 지역본부 단위의 공동교섭, 공동투쟁이 강조되는 반면 전국차원에서 이를 결집시키고 집중시킬 수 있는 전국적인 공동의 요구나 투쟁의 집중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지역본부는 해당 지역본부만의 완결성을 추구하였고 타 지역본부의 문제는 관심밖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또한 그 결과 연맹은 각 지역의 지원 요구를 채우기에 급급하면서 중앙의 공백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었다. 이전의 산별노조 건설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과 처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기존의 산별노조 건설계획은 지역별 분산·개별성을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는 좀더 진전되면서 지역단일노조를 거치지 말고 처음부터 전국단위의 산별노조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아가게 된다.

1996년 2월 병원노련 정기대의원대회는 기존의 산별노조 건설안과 새롭게 제기된 안, 이 두 가지 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1996년 하반기에 이를 최종 결정하기로 함으로써 이를 공론화하였다. '96 공투를 마친 후 병원노련 지도부는 노동법개정총파업투쟁과 함께 산별노조 건설방침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최종

4) 95년도 상반기 투쟁은 94년도에 추진되었던 3개 지역본부, 특성조직에 추가하여 대구경북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가 공동교섭을 추진하였다.

확정을 하반기 주요사업으로 설정하고 전국순회간담회, 대표자회의, 각종 토론회 등을 진행하였다. 1997년 3월 연맹 대의원대회는 마침내 이러한 결과를 집약하여 건설안을 확정하고 1998년 2월에 전국산별노조를 건설할 것을 결의하였다.

## 2. 산별노조 건설추진위원회 활동

1997년 3월 연맹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병원노련은 전체 조직을 산별노조건설추진위원회(추진위) 체계로 전환하였다. 또한 위원장 산하에는 산별노조 건설추진기획단(산별기획단)을 두어 산별노조 조직 체계 및 규약, 교섭과 투쟁, 산별노조의 발전전략, 조합비 통일 및 예산배분 등을 중점 연구검토하고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토록 하였다. 아울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산별기획단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필요한 자문을 구하도록 하였다.

산별기획단 활동의 결과는 올해 9월에 열린 공청회를 통해 단위노조 간부들과 공유되었는데, 특히 이 자리는 산별기획단뿐만 아니라 단위노조 간부들까지 각계 전문가, 경험자들로부터 풍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 공청회를 출발하여 병원노련은 제출된 안에 대한 광범한 의견 수렴과정을 조직하고 있다. 각 지역본부별 운영위원회를 통한 대표자 토론회, 상집간부회의를 통한 간부토론회 등을 벌이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 대의원대회로 모아 최종 결정에 이를 예정이다.

산별기획단이 지금까지 마련하여 조직에 제출한 것은 주로 새로이 건설할 산별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예컨대 가입 대상, 산별노조의 조직체계, 각 기관의 역할과 운영 등이다. 조합비 통

일 등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토론회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 교섭과 투쟁, 산별노조 발전전략 등은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음은 제출된 안의 주요내용이다.

### 가. 조직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인 '의료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기로 하였다. 가급적 포괄범위를 넓게 잡을 목적으로 대분류인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을 검토하였으나 이 범위에 포함되는 노조들 중 병원노련에 속하지 않은 노조가 있는 것을 고려하여, 일단 중분류인 의료업으로 하고 이후의 타조직과의 조직통합을 통해 조직을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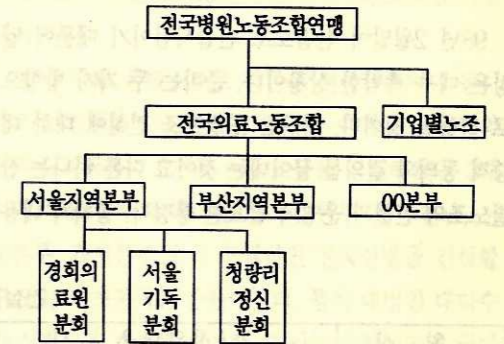
### 나. 조합원 범위

의료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비정규직 포함), 노조 활동으로 인하여 해고된 노동자, 조합에 임용된 자, 일시적 실업자 등을 조합원 범위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다만 중노위 심판 이후 복직판정이 나지 않은 해고자, 일시적 실업자 등은 노동부가 시비를 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동부 사전 질의를 통해 입장을 확인한 후 대처해나갈 방침이다.

### 다. 조직체계

산별노조가 되면 노조는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게 되며, 산별노조가 단위노조로서 모든 법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 건설되는 산별노조는 그 내부의 조직체계를 산별노조(본조)-지역본부-지부로 편제하기로 하였다. 지역본부는 지역별로 설치되며, 지부는 각 사

업, 사업장 단위로 설치된다. 현재의 연맹-지역본부-기업별 단위노조의 체계가 산별노조-지역본부-지부로 바뀐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물론 98년에 산별노조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산별노조에 합류하지 않는 일부의 기업별노조가 있을 것으로 예상, 연맹 산하에 기업별노조가 산별노조로 거의 합류하는 2000년까지는 연맹을 존속시키기로 했다.



### 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산별노조의 성패는 조직을 얼마나 확대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직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기존 기업별노조들을 통합한 비교적 덩치가 큰 노조 중의 하나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대병원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유지·개선하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진정한 산업별노조가 아닐 뿐만 아니라, 언제 또다시 기업별노조로 환원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조직일 수밖에 없다. 산별노조가 궁극적으로 의료노동시장을 장악, 산별적 기준에 맞는 노동조건과 고용협약을 관철시켜내려면 중소병원 노동자, 의원급 노동자들을 적극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직률의 측면에서도 이들이 전체 병원노동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넘어서고 있다. 10만명의

조합원을 목표로 할 때 약 6만명 이상의 중소병·의원 노동자를 조직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sup>5)</sup>

이러한 배경에서 산별노조는 조직강화특위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 특위에는 전임간부와 예산이 우선 배치되어 미조직 조직화 작업을 전담하게 될 것이다.

마. 건설절차, 계획

98년 2월말이 산별노조 건설시점이기 때문에 일정은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준비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하나는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대중적 동의와 결의를 끌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산별노조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정책적 내용

을 준비하는 것이다. 전자는 공청회, 각종 교육, 간담회 등을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산별노조 건설을 앞둔 시점이므로 단위노조 대의원까지는 한 번 이상 연맹 지도부가 직접 만난다는 목표로 강행군을 계획하고 있다. 후자는 규약·규정 작업, 조합비 통일문제, 산별노조의 교섭과 투쟁 및 발전전략 등에 관한 것이다. 특히 산별노조의 장기적 정책과 관련한 내용은 단위노조의 요구가 매우 높은 사항이다.

바. 쟁점들

지금까지 병원노련이 산별노조 건설을 준비해오는

건설절차, 계획

일시	사업내용	비고
9/11	의료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공청회	의료산별노조 건설안에 대한 의견 수렴
9월말~10/15	의료산별노조에 대한 단위노조 상집간부 토론	간부들부터 산별건설 분위기 만들기
10/1~2	연맹 중앙위원회	10/15일 임시대의원대회 안전 상정
10/15	연맹 임시 대의원대회 : 의료산별노조 건설 준비위원회 결성	본격적인 의료산별노조 준비체계 마련
9월~11월	대중적인 산별분위기 형성 단위노조 간부·대의원 순방간담회(10/16~11월말) 1노조 1교육 지역본부별 산별학교(노동교실) 지역본부별 노조창립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의료산별노조 구조, 6행시 짓기, 로고 공모전 의료산별노조 건설기금 모으기(조합원 1만원)	순방간담회·교육·선전·문화행사 등을 통해 의료산별노조 건설의 대중적 분위기 형성
10월~12월	단위노조별 대의원대회 : 의료산별노조 참가 결의	단위노조별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의료산별노조에 참가할 것을 결의
12월	의료산별노조 건설 준비위원회 대표자회의	산별노조 건설 계획 점검 및 98공투 준비 논의
12월~98년 1월	단위노조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 규약 변경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규약변경(조직형태 변경) 00병원노동조합 → 전국의료노동조합 00병원분회
98년 1월~2월초	단위노조별 발기인(대의원) 선출	노조별 인원비례에 의해 선출
98년 2/28	의료산별노조 결성대회	임원선출, 규약 채택, 사업계획, 98임단투 계획 등
98년 3월~	노동부에 의료산별노조설립신고	의료산별노조 합법성 쟁취투쟁

5) 병원노련의 현재 조합원은 3만5천여명이다. 한국노총에 속한 세브란스 노조, 순천향의대 노조 등이 모두 산별노조로 합류한다 하더라도 그 숫자는 6~7천명을 넘지 못한다.

과정에서 몇 가지 쟁점과 논란이 있었다. 그 중에는 중요한 쟁점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지엽적인 것도 있으며, 이후에도 쟁점사항은 수없이 생길 것이다. 물론 아직 산별노조를 건설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평가를 내리기에는 다소 무리일 수 있다. 그러나 산별노조를 준비하는 타 조직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까지 병원노련의 산별노조 건설 준비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내용들을 다소 투박하게나마 소개하고자 한다.

(1) 어떤 경로를 밟을 것인가?

지역별단일노조를 거쳐 전국산별노조로 나아갈 것인가? 처음부터 전국산별노조를 건설해나갈 것인가?

가장 먼저 논란이 된 것은 건설 경로였다. 요컨대 지역본부 단위를 하나의 단일조직으로 통합하고 이어서 전국산별노조로 갈 것인가 혹은 전국단위에서 동시에 산별노조로 전환하면서 바로 전국산별노조를 건설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우선 지역차원의 단일조직을 거쳐 전국단위의 산별노조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의 주요한 문제의식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현재 연맹에 속해 있는 지역본부간, 본부 내 규모에 따른 노조간 활동 역량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맹 조합원의 43%가 가입해 있는 서울본부에서부터, 조합원의 3%가 가입해 있는 강원본부까지 규모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지역본부 활동 수준도 커다란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3년째 공동교섭을 진행해왔던 본부와 그렇지 않은 본부 간 의식적, 조직적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현실을 인정할 때 모든 본부가 한꺼번에 산별노조로 간다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96년 공동요구 공동투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투쟁해왔지만 아직까지 전국병원노동자들이 통일성을 갖는 통일적인 요구를 가지고 투쟁을 진행하지 못

하고 있으며, 연맹의 지도 집행력과 산별노조 건설에 필요한 내용적 준비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산별노조를 힘있게 건설하기 위해서는 97년 하반기 서울, 지의노협 등이 지역(특성)노조 건설을 추진하고, 전국산별을 추동할 역량(인력, 재정)을 전국으로 올려 기존의 역량과 함께 전국산별노조를 건설하는데 투여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나머지 지역본부를 포괄, 98년 하반기~99년 상반기에 산별노조를 건설해야 한다.'

이에 반해 산별노조로 전환은 전국단위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개괄하면 아래와 같다. 지금까지 3년차 공동교섭을 진행해왔던 3개 지역(특성)본부와 대경본부, 부산본부, 광주전남, 전북본부, 경기본부 등을 포괄하면 전국산별을 건설할 수 있는 기초동력은 만들어진다. 특히 대병원 대다수가 산별노조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지역단일노조라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물론 지역본부별 역량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단일노조를 전제할 때 전국단위의 단결에 비해 지역단위의 단결이 강조됨으로 인해 전국적 통일성이 약화되고 그 결과 연맹 중앙의 구심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연맹 중앙의 약화는 지역별 개별화 및 편차 확대로 이어지면서 약순환에 빠진다. 지역본부별 개별화 및 편차 확대는 연맹 중앙의 강화, 전국차원의 통일적 투쟁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하다. 또한 지역차원의 단일노조를 거쳐 산별노조로 나아가는 과정은 2중적 과정일 뿐 아니라 가능한 지역본부도 서울본부 이외에는 없다. 예컨대 조합비만 하더라도 지역단일노조로 만드는 과정에서 한번 통일시키고, 전국산별노조가 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통일시키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입장을 한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 속에는 연맹중앙 또는 산별중앙과 지역본부와의 관계, 지역본부간 역량의 편

차와 그 해소방안, 산별노조 건설 주체동력에 대한 판단, 건설시기 등 여러 차원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병원노련 지도부는 이에 대한 최종 입장 정리를 위하여 96년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대표자회의를 소집하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대체적으로 98년 초반에 전국 산별노조를 만들자는 의견들이 많았다. 병원노련 지도부는 이런 의견수렴을 토대로 98년 2월 전국산별노조를 건설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조직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직체계는 두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하였다. 첫번째 안은 일정규모 이상(예를 들어 조직대상 500명 이상)인 조직에 대해서는 기업별 지부를 인정하고 그 미만의 조직은 하나로 묶어 지역지부로 편제하는 방안이었다. 이것은 6~70년대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조, 섬유노조 등의 취했던 조직체계였다. 두번째 안은 기업별 조직의 규모와 상관없이 지역조직을 하나의 지부로 묶고 기존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 조직은 분회로 전환하는 방안이었다. 검토 결과 첫번째 안은 기존의 기업별노조가 별로 달라지지 않으면서 온존될 위험성, 대규모 노조와 중소규모 노조 간 조직적 장벽이 생기면서 서로 분리될 위험성 등이 많이 제기되었다. 요컨대 산별노조의 조직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기업별지부와 지역지부를 별개로 두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는 지적들이었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거쳐 병원노련은 산별노조(본조)-지역단위의 지부-기업단위의 분회<sup>6)</sup> 체계를 확정한 상태이다.

그런데 이런 조직체계 하에서 두 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는 조직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다소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 예컨대 지방공사의료원 노조들은 임금수준과 체계를 일치시키려는 오랜 노력<sup>7)</sup>을 통해 동일한 기본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각종 수당도 거의 동일한 상태이다. 카톨릭의료원 노동조합<sup>8)</sup>도 노조 설립시에는 8개 병원노조로 각각 설립되었으나 노조가 하나로 통합된 후 하나의 임금체계와 하나의 단체협약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훈병원, 백병원 역시 같은 경우이다. 현재의 전망으로는 산별노조로 전환된 후 단기간에 표준적인 임금체계와 통일단협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그럴 경우 교섭 및 활동체계가 지역본부별로 편제되면 이러한 병원들의 경우 지역별로 임금이나 단체협약이 각각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우려하는 점이다.

그러나 기업을 넘어서 지역별 조직체계를 갖추어야 하는 원칙을 훼손할 수 없기 때문에 방향은 지역본부별로 나누어 편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해당 조직들이 지역별로 쪼개지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산별노조로 합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 후 어려운 경우는 경과기간을 두어 지역본부로 편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 직종조직체계를 둘 것인가?

병원노동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의료기사, 방사선기사, 사무직, 시설직, 청소, 경비직 노동자 등 수십 개 직종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다양한 직종 구성은 노동조합 내 단결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직종간 이해의 대립이 조직갈등을 낳기도 하며 일부 직종 간에는 직무상의 역

6) 최근 병원노련 임시 중앙위원회는 산별노조(본조)-지부-분회 대신 산별노조(본조)-지역본부-지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하에서도 이 결정에 따라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7) 물론 정부의 임금통제정책도 지방공사의료원 노조들이 통일적인 기본급 수준을 유지케 한 한 요인이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8) 카톨릭의료원은 서울, 경기, 인부천, 대전충남 등 4개 지역에 걸쳐 8개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 분담이 종종 신분적 차별로 이어지면서 감정적 대립과 갈등으로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직종 내부에서는 끈끈한 단결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를 조직에 잘 반영하면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 병원노동조합은 파업시 강력한 규율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을 보통 직종별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노동조합은 노동자 전체 요구를 중심에 두더라도 직종별로 특수한 정책내용을 개발하고 조직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의료관련직 노동자들은 직종협회라는 틀로 직종별로 조직되어 있어 노동시장에 대한 일정한 통제력을 행사하기도 하는데<sup>9)</sup> 산별노조로 발전하였을 경우 이러한 역할을 산별노조가 담당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직종체계를 둘 것인지 여부에 대한 찬반의 의견은 직종 조직이 갖는 이와 같은 미묘한 성격 때문이다. 찬반의 의견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산별노조가 되면 현장에 기초한 직종별 정책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각 직종별 노동과정협약이나 표준임금모델, 직무훈련 교육 등을 산별노조가 담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산별노조는 노동시장을 장악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면허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필요한 직종별 정책내용을 마련하고, 미조직 특위와 연계하여 미조직 조직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직종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 직종분과위원회를 두자는 주장의 요지이다.

직종분과위원회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 "직종분과위원회를 두게 되면 공조직과 마찰이 생기면서 직종 간 갈등이 조장될 수밖에 없다. 또한 직종분과위원회를 둔다 하더라도 간호사, 조무사, 의료기사, 방사선기사 등 자격증을 갖춘 다

9)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방사선기사협회, 의료기사협회 등이 구성되어 있는데 매년 일정한 회비를 협회에 징수하고 보수 교육을 실시한다. 중소도시로 갈수록 직종협회 지부가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지방에 따라서는 최저임금기준을 정하여 그 수준 이하로 취업하지 않도록 자신들의 규율로 정하여 지켜나가는 경우도 있다.

수의 직종 중심으로 되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 따라서 직종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말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정책국에서 담보하자"

현재 연맹의 논의는 직종분과를 두어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그러나 직종조직체계를 두더라도 이 조직체계가 본조-지역본부-지부로 이어지는 공조직 체계와 충돌이 없도록 자체 회원체계를 두지 않는 '분과위' 체계로 만들기로 하였다.

(4) 임원 선출에 관해

산별노조는 단위노조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을 조합원의 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었다. 다만 전국에 걸쳐 150여개 사업장에 흩어져 있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유세, 투표, 기타 각종 선거관리를 진행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게 문제였다. 따라서 논의는 자연스럽게 선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로 모아졌다. 우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처럼 위원장, 지부장, 지회장 동시선거 방식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전교조는 처음부터 산별노조로 출발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병원노조의 경우 임기 종료 시점이 각각 다른 상황에서 무리하게 지부장의 임기까지 맞출 필요가 있겠느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졌다. 아울러 위원장, 지역본부장, 지부장의 임기를 각각 얼마씩으로 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같이 논의되었다. 현재 병원노련의 잠정안은 위원장과 지역본부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여 동시선거를 진행하는 정도로 하자는 것이다. 참고로 지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다.

산별노조 설립시에는 발기인들이 모여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우선은 간선으로 선

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직선 집행부를 어느 정도의 경과규정을 두고 선출할 것인가 하는 점도 논란이 되었다. 직선 위원장은 가급적 빠른수록 좋기 때문에 98년 하반기에 선출하자는 주장과 어느 정도 산별노조를 안정화한 후 99년 하반기에 직선제를 실시하자는 주장이 맞섰으나 중앙위원회 토론 결과 후자 의견이 다수여서 99년 12월에 직선으로 산별노조의 집행부를 선출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5) 위원장의 본부장, 지부장 인준권  
서구의 경우처럼 산별노조 위원장이 본부장, 지부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정서나 초기 산별노조의 조직통합력 등을 감안했을 때 임명 방식은 무리이고, 직선제로 선출한 후 위원장이 인준하는 정도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다수였다. 그런데 이 방식에 대해서도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것은 선출된 사람에 대해 인준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두는 것은 불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었다. 또한 산별노조 집행부가 어용화하였을 때 인준권을 악용하여 인준 거부를 남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지도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 인준절차는 두되 인준 거부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중앙위원회 결의와 같은 절차를 밟아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6) 조합비 통일, 재정 통일문제  
현재 단위노조 조합비는 기본급 1%~2%, 통상임금 1%~2% 사이로 단위노조별로 다르다. 이것을 어떻게 통일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논의 결과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자는 데까지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산별노조 조합비는 가급적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나 가장 높은 기준에 맞출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는 많은 노조들이 너무 많은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종결정은 평균치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일정기간 경과규정을 두자는 노조도 많은 상황이므로 좀더 논의가 진행되어야 최종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 남아 있는 문제들

요즘 단위노조 간부들은 산별노조의 상을 그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많다. 산별노조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현실감 있고 명쾌한 '무엇'을 제시해 달라고 한다. 교섭은 어떻게 할 것이고 투쟁은 어떻게 할 지, 단위노조의 일상활동은 어떻게 변화될 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는 것이다. 또 있다. 현장조직이 침체되고 있는데 산별노조가 되면 현장조직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내년 투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집단교섭은 할 것인지? 등 끝이 없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지금 이 시점에서 해답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무망하므로, 부딪치면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산별노조를 건설하고 그 노조가 제 자리를 잡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에 부딪치면서 나가야 할 것이다. 시행착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모든 어려움을 조합원 대중과 솔직하게 공유하고 설득하면서 함께 해결해나간다는 자세로 임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믿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합원들도 작은 기업별 이해를 허물고 산별노조를 열어제길 자신의 힘을 확신해가리라 믿는다.

##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

### 질의 및 토론

#### 1. 가입대상

##### 가. 규약상의 조합원 범위문제

산별노조의 조합원 범위는 종업원 신분 여부를 불문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폭넓게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노동부는 중노위 재심판정 이후의 해고자나 실업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노동부 질의회시 참조).

병원노련은 일단 포괄적으로 조합원 범위를 정의(규약 제7조)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후 세부사항을 규정해놓을 예정인데, 앞으로 계속적인 다툼이 될 예정이다. 특히 현재 병원노련 임원 중에는 해고된 임원이 상당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임원의 조합원 자격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나. 조합원 가입 범위가 기업별 협약으로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병원노련 산하 상당수 노조에서 조합원 가입 범위가 협약으로 체결되어 있는 상황이다. 유니온샵이 아닌 경우는 단체협약에서 정하지 말고 규약으로 정하도록 지침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사용자는 단체협약 체결시 조합

원 가입범위 축소안을 들고 나온다든가(경비, 전산요원, 총무과, 기획담당, 중간관리자-계장급인 수간호나 주임급인 주임간호사 배제) 혹은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는 노동부나 지노위의 행정해석을 받아 가입 절차를 마친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는 방식으로 시비를 걸어온다. 특히 행정관청의 행정해석이 전반적으로 노조에 불리한 방향으로 내려지면서 조합원 범위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별노조가 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으리라 보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다. 토론내용

- 해고자나 실업자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서는 설립시의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설립신고시에는 해고자나 실업자를 임원에서 제외하고, 설립신고 후에 규약 변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음.

- 산업별노조 하에서는 무리한 유니온샵의 추구보다는 노동자 접근권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듯함.

- 조직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복수노조금지조항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조직대상이 되는 노동자(사업장)를 일일이 열거해야 할 것임.

## 2. 단체협약의 효력

### 가. 이의제기가 예상되는 상황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산별노조가 되더라도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병원에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비를 걸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열거해보면

(1) 이른바 채무적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2) 조합별 시바-조합활동부분

- 대의원대회 유급활동을 인정하고 있으나 본조 대의원에만 해당하고 지부 대의원대회는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 혹은 그 역의 가능성

- 상급단체 출장시 유급활동으로 인정하는 데 본조를 상급단체로 보지 않고 연맹 또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만 인정할 가능성

- 조합간부의 범위를 "임원, 각 부의 부·차장, 대의원"으로 하여 유급활동시간 부여, 인사 또는 징계시 조합과 협의조항이 있는데 지부의 간부로 대체할 수 없다며 시비를 걸 가능성

- 상급단체 전임조항이 있는데 본조 중앙의 상근인 경우는 상급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는 상급단체 전임조항을 무력화시킬 가능성

- 조합비 공제조항 삭제 요구

### (3) 단체교섭, 기타

- 조합을 대표하는 자는 위원장임을 이유로 산별노조 위원장의 교섭참가를 요구하고 이를 빌미로 결정권자인 원장이 교섭에 나오지 않으면서 교섭을 해태할 가능성

### 나. 토론내용

- 교섭형태와 권한의 분배문제 등을 규약에 명시하고, 단체협약사항과 임의적 협의사항을 분리하여 단협은 산별노조에서 체결하고, 임의적 협의사항은 단위사업장(지부)나 지역본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 분쟁 해결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단협에 중재인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특히 필수공익사업부문에서는 노동자쪽 추천인을 포함하는 중재인 규정을 단협에 명시해야 할 것임.

## 3. 규약변경시 결의해야 할 사항

가. 조건부 조직형태변경 결의

- 산별노조 설립시부터 유효

### 나. 규약변경

- 단위노조를 지부로, 위원장을 지부장으로, 규약을 규정으로

다. 각종 권리, 의무는 산별노조가 승계

라. 노동조합의 자산 승계(필요할 시 예외조항)

마. 단체협약 승계

바. 조합원 승계

### 사. 토론내용

- 조건부 해산절차를 통한 경우 기존 단협의 해지 문제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므로, 기존의 단협을 유지

할 수 있는 조직형태 변경을 통하는 것이 유리할 것임.

## 4. 절차상의 문제(설립절차)

아래 표 참조

## 5. 사용자단체 구성에 관련한 부분

가. 산별노조가 제 역할을 하려면 중앙교섭의 정착 여부가 핵심관건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병원협회가 있으나 실질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력이 없어 교섭을 회피하는 상황이다. 법률적으로도 병원협회를 대상으로 교섭에 응하도록 강제할 수단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나. 토론내용

산별노조의 노동자 장악력에 따라 사용자단체의 결성 여부가 달려 있음. 산별노조에서 강력한 장악력을 가지고 단체교섭과 쟁의 등을 추진해나갈 때 사용자들은 개별사업장들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사용자단체의 구성이 불가피해질 것임.

## 6. 기타 토론내용

- 산별노조 하에서는 총회의 소집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규약에 총회 규정을 두지 않고 조합원 총의를 물어야 하는 경우는 조합원 투표나 선거로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할 것임. 기타 총회의결사항은 대의원대회로 넘겨도 별 문제 없을 것임.

- 총회(또는 대의원대회)의 대표소집요청자를 별도로 규정하지 말고,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이 유리할 것임.

절차상의 문제(설립절차)

12월~98년 1월	단위노조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 규약 변경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규약변경(조직형태 변경) 00병원노동조합 → 전국의료노동조합 00병원분회
98년 1월~2월 초	단위노조별 발기인(대의원) 선출	노조별 인원비례에 의해 선출
98년 2월 28일	의료산별노조 결성대회(발기인대회)	입원선출, 규약 채택, 사업계획, 98임단투 계획 등
98년 3월~	노동부에 의료산별노조 설립신고	의료산별노조 합법성 쟁취투쟁

# 변호인 접견 거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 소 장

원 고 김도형  
 서울 마포구 서교동 395의 130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오영, 김진국, 이원재, 이찬진, 정태상, 이인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6의 1 (성재빌딩 6층)

피 고 대한민국  
 위자료 청구의 소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

#### 1. 당사자

원고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5의 1 소재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1997. 11.

22. 18:00경 서울 관악경찰서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있는 피의자 정병도와 배병화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였으나, 동 경찰서로부터 접견을 거부당하고 말았습니다.

#### 2. 이 사건 변호인 접견 거부의 경위

가. 서울 관악경찰서는 1997. 11. 22. 04:00경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당선자인 정병도(조선해양학과 4학년)와 배병화(중어중문학과 4학년)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정병도의 가족등으로부터 시급히 변호인 접견을 하여줄 것을 요청받고, 같은 날 18:00경 관악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피의자들이 조사받고 있다는 보안2계 사무실로 올라가, 변호사 신분증과 접견신청서를 제시하고 위 피의자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정식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관악경찰서 보안2계장이라고 신분을 밝힌 경찰관은 원고에게 변호인 선임계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급히 접견 요청을 받아오게되어 변호인 선임계는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면서 선임된 변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 또한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와 접견할 권리가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34조의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보안2계장은 막무가내로 변호인 선임계를 가지고 오기 전까지는 접견을 시켜줄 수 없다면서 원고가 제출한 접견신청서를 반환하고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변호사로서의 정당한 접견권이 남득할 수 없는 이유로 침해되어 당황하였고 더구나 위 피의자들의 상황도 걱정되어 그대로 돌아가는 것은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거듭하여 이 문제에 관한 권한 있는 사람과의 면담 및 피의자들과의 접견을 요구하였는바, 잠시 후에 보안과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원고에게 "접견 목적이 무엇이나, 어떠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는 등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그러한 질문에까지 답변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변호사인 것이 확인된 이상 피의자들과의 접견을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안기부나 경찰청 대공본실에서도 지금은 선임계가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의 접견을 불허하지 않는데 일선 경찰서에 이러면 되느냐"면서 즉시 피의자들과의 접견을 시켜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보안과장은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담당 검사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서 곤란하다", "지금 변호사와의 접견을 시켜주면 수사에 지장을 받게 된다"라는 등의 핑계를 대며 접견 요청을 거부하였고, 원고는 1시간이 넘도록 접견을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날 19:30경 보안과장은 원고에게 "지금은 수사중이니 접견을 시켜줄 수 없고 내일 오후 4시경 수사가 일용 마쳐지니 그때 선임계를 가져오면 접견을 시켜주

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접견 불허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하는 수 없이 그냥 관악경찰서를 나올 수밖에 없었고, 경찰서 정문 앞에서 접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서울대학교 학생들에게 접견을 거부당하였다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접견을 거부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연락을 취한 한겨레신문사의 김보협 기자와 휴대폰을 통하여 접견을 거부당한 경위를 설명해주었습니다.

#### 3.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우리 헌법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4조는 이러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변호사인 원고는 이 사건 피의자들을 접견할 권리가 있음이 명백합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방어권 행사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제도로서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기본권의 하나이며, 현행법상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울 관악경찰서의 보안2계장과 보안과장이 원고의 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접견 신청을 거부한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 형사소송법상 인정된 원고의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공무원인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 무죄등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즉시석방 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최병모

### 헌법소원청구소송 경과

본건 헌법소원은 1995. 8. 17. 제기되었다.

그 후 본건 헌법심판사건 계속중 법무부장관은 1997. 11. 20.자로 종래의 '교정 835.6-19592(71. 10. 28.) 구속 피의·피고인 석방절차에 따른 지시'를 폐지하고 '구속 피의·피고인 석방절차 개선지침'을 시달하였으며, 검찰총장은 '석방지휘신속처리지침'을 제정하여 1997. 12. 1.부터 시행할 것으로 각급 검찰청에 시달하였다. 위 지침등에 의하여 1997. 12.부터는 무죄등의 선고로 형사소송법 제331조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피고인은 포승, 수갑 등 계구 사용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교도소에 환소한 후 신속하게 석방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법무부장관은 1997. 11. 27. 헌법재판소에 무죄 등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석방절차가 위 지침등의 시행으로 개선되었음을 주장하면서 본건 헌법소원사건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에 따라 1997. 12. 24.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위 지침의 각 제정, 시행으로 더 이상 법정에서 석방대상 피고인을 교도관이 석방절차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의 없이 교도소로 연행 내지 구금하는 행위를 계속

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검찰총장의 위 개선지침등에 의하더라도 무죄등의 판결 선고 후 그 피고인을 즉시 석방하지 아니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교도소에 다시 호송한 후 석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점은 여전히 헌법 위반이 아닌지 의문이다. 또한 종래 장구한 기간에 걸쳐 무죄등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구금상태로 교도소에 호송하고 교도소장이 검사의 석방 지휘를 수령한 다음 오후 늦게야 비로소 석방해은 관행이 계속하여 존재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본건 헌법소원을 계기로 석방절차가 개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본건 심판이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 별첨자료

1. 헌법소원심판청구서
2. 헌법소원심판청구이유보충서
3. 구속 피의·피고인 석방절차 개선지침(법무부)
4. 석방지휘신속처리지침(검찰)
5. 헌법재판소 결정문

그럼에도 본건에 있어 관악경찰서측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원고의 접견교통권을 전면 침해하고 만 것은 법치주의를 짓밟는 횡포로서, 원고는 앞으로 또 초래될 가능성이 노후한 '법치주의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에 대해 징벌적 의미의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원고의 형용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그 액수는 변호인 접견권의 중요성과 이 사건 접견금지처분의 경위 및 결과, 징벌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볼 때 금 30,000,000원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접견 거부를 당한 1997.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원고는 피고의 위 의무이행을 구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 생략

1997. 12.

서울지방법원 귀중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원 고 변재신

제주 북제주군 한림읍 동명리 815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병모

제주시 이도2동 860의 10 (우 690-022)

침해된 권리 청구인의 헌법상 신체의 자유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995. 7. 27. 현재 제주교도소에 미결수용자로 수용중이던 청구인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제주) 95노11 살인 피고사건에 관하여 1995. 7. 27. 10:00경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검사와 제주교도소장이 청구인을 즉각 석방하지 아니하고 동일 15:30경까지 제주교도소 내에 불법구금한 행위.

청구취지

제주교도소에 미결수용자로 수용중이던 청구인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제주) 95노11 살인 피고사건에 관하여 1995. 7. 27. 10:00경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제주교도소장이 청구인을 1995. 7. 27. 10:00경부터 동일 15:30경까지 석방하지 아니하고 구금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

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1. 청구인은 1994. 10. 10. 살인 피의사건으로 제

주경찰서에 긴급구속되었고 1994. 10. 12.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그후 검사는 청구인을 1994. 10. 31. 제주지방법원 94고합252 살인피고사건으로 구속 기소하여 청구인은 1995.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위 사건에 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 항소해 위 사건의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제주) 95노11 살인 피고사건에 관하여 1995. 7. 27. 10:00경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2. 이에 청구인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 변호인인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병모는 위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1994. 7. 27. 12:07경 제주교도소에 청구인을 지체없이 석방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인에 대한 미결수용자석방청구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교도소장은 검사의 석방지휘가 없이는 미결수용자를 석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석방을 거절하다가 동일 15:30경에야 검사의 석방지휘서를 접수하고 청구인을 석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그러나 이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

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교도소장이 청구인을 즉각 석방하지 아니한 공권력의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동시에 헌법이 규정하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고, 이는 결국 나아가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에 위배된 것입니다. 이하 이를 자세히 주장합니다.

### 가. 구속영장의 효력 상실

헌법상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되지 아니하며(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 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331조 본문).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구속의 사유는 형사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나아가 일정한 증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국가형벌권 행사를 위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박탈하는 제도이므로(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 형사재판의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31조 본문의 규정은 주의적 규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국가는 즉시 피구속자를 석방하여야 함은 당연하고,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후에도 구속을 계속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불법구속인 것입니다.

### 나. 검사의 석방 지휘의 불필요성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한 경우에만 국민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73조, 제201조), 그 경우에도 구속기간을 법정하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2조, 제202조, 제203조).

또한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이 구속한 때에는 법관이(형사소송법 제93조), 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에 의해 구속한 때에는 수사기관이 각각 구속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형사소송법 제209조, 제93조) 그밖에 구속상태의 해제에 법관의 명령이나 검사의 석방 지휘 등 특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신구속제도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과 법률의 엄격한 제한 아래 개인의 가장 소중한 권리의 하나인 신체의 자유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예외적인 제도임에 비추어 국민의 권리를 침해, 박탈하는 구속에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고, 반면에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당연히 그 침해, 박탈된 권리를 회복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5조 제1항은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실효된 때에는 판결이 선고된 날에 지체 없이 피고인을 석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검찰 내부의 사무처리를 위한 규칙에 지나지 아니하고, 가사 위 규칙이 당해 판결이 선고된 날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인을 석방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라면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것입니다. 즉, 무죄 등의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영장은 실효되는 것이고, 영장이 실효된 이상 그 순간부터 검사나 교도소장은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한을 상실하는 것이며, 따라서 당해 구속피고인은 그 즉시 석방되지 않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하여 그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구금의 주체는 검사가 아닌 제주교도소장이며 다만 검찰의 내부 사무처리상 교도소장은 검사의 석방 지휘가 있을 때에만 구속피고인을 석방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일 뿐이므로 제주교도소장의 청구인에 대한 본건 구금행위는 위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검사 역시 본건 청구인에 대한 구금행위에 있어 공권력행사의 주체라 보더라도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선고된 당일 15:30경 석방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 이미 준항고에 의하여 그 구금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항고의 이익이 없어 준항고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나아가 교도소장의 불법구금행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룰 수 있을 것이나, 이 역시 청구인이 석방된 당일 15:30 이후에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이므로 행정소송으로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주교도소장 및 검사의 이 사건 청구인에 대한 불법 구금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4. 그러므로 청구인은 검사와 제주교도소장의 청구인에 대한 1995. 7. 27. 10:00경부터 동일 15:30경까지의 공권력의 행사인 구금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권을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헌법소원심판청구이유보충서

사 건	95헌마247 불법구금위헌확인
청구인	변재신
피청구인	제주교도소장

위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의 답변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함과 동시에 헌법소원심판청구이유를 보충합니다.

1. 사건구제절차를 결여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경우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주장하기를 청구인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로서 검사를 상대로 한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 또는 교도소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잘못 자체를 다투는 권리구제절차를 의미하는 것이고, 공권력의 행사, 불

선고, 88헌마22 결정; 1992. 7. 23. 선고, 91헌마 909 결정 등), 또한 이러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는 적법한 구제절차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1헌마47 결정; 1993. 7. 29. 선고, 92헌마6 결정). 그런데 이 사건에서 1995. 7. 27. 10:00경 시작된 피청구인 제주교도소장의 불법구금행위는 동일 15:30경 청구인을 석방함으로써 종료되었는바, 따라서 그 이후에는 공권력의 행사인 불법구금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위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을 수 없어 직접 피청구인의 불법구금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2.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또 헌법소위제도는 국민의 기본권 침

그러나, 헌법소원의 본질은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도 겸하고 있으므로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하여서 이를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경우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 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입니다(헌법재판소 1992. 4. 14. 선고, 90헌마81 결정;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1993.3. 11. 선고, 92헌마98 결정; 1993. 7. 29. 선고, 89헌마31 결정 등).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주장도 이유 없습니다.

### 3. 피청구인의 구금행위가 합헌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31조는 영장주의의 자명한 원리를 천명한 것일 뿐 영장의 실효에 따른 석방에 관한 구체적인 행정적 조치는 행형법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서 행형법 제53조, 제54조 제2항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행형법의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331조가 규정하는바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구속영장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구속영장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교도소장은 당연히 그때로부터 피고인

리 무죄등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라도 검사의 석방지휘가 없는 이상 언제까지라도 그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석방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교도행정상의 지휘통솔관계를 이유로 하여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행형법 제54조 제2항이 규정하는 "권한 있는 자의 명령"이란 형사소송법 제209조, 제93조에 의하여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는 경우와 같이 인신구속기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구속상태를 해제하는 경우등에 있어서의 검사의 명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라도 무죄판결등이 선고된 경우에 별도로 검사의 석방지휘를 요구하는 취지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위 행형법의 규정이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 및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죄등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도 검사의 석방지휘가 있을 때에만 구속피고인을 석방하라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이 역시 헌법에 위반된 위헌 무효의 규정인 것입니다.

나. 피청구인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죄 선고를 받은 자의 경우에도 석방절차상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수용시설에 보호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위헌이 아니며, 검찰청법 및 검찰사건사무규칙은 이와 같은 석방절차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역시 합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죄등의 판결이 선고된 자를 헌법 및 법률상의 근거 없이 계속하여 구금하는 행위가 결국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해위라고 평가될 수 없는 것이고, 무죄등의 선고를

것이며, 검찰 내부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하여 사무절차를 규정한 검찰사건사무처리규칙 제105조 역시 무죄등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계속하여 구금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근거없는 독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 4. 교정시설의 출소절차상 불가피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교정시설에서의 피고인등의 석방절차에서는 (1) 출소대상자로부터 수용중 지급한 각종 지급품(피복, 식기류, 침구류 등)의 회수, (2) 수용시 휴대금품 또는 수용중 영치된 금품의 수량 확인 및 환급, (3) 오인석방을 방지하기 위한 석방지휘서류와 석방될 자와의 본인 여부의 확인, 귀주에 필요한 피복, 여비의 유무 파악과 무의탁자의 석방 후 귀주보호대책의 강구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필요한 절차를 밟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은 불법구금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첫째로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수의(囚衣)등을 착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기본권 침해인 것이므로(이미 헌법재판소 93헌마280호로 위 사안에 대하여서는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복의 회수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실효된 피고인을 계속하여 구금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고, 둘째로 식기류, 침구류 등은 당초부터 교도소 당국이 소유, 관리하면서 미결수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회수하기 위해 구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결선고 전에 미리 반환할 수 있는 조치를 준비하여 법정에서 무죄판결등이 선고된 즉시 이를 이행하면 그만인 것이고, 넷째로 오인석방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절차와 귀주에 필요한 여비 등의 파악과 귀주보호대책의 강구 역시 다른 시기에 이를 준비하여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집행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주장은 교정기관의 사무집행상의 편의만을 내세워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의 하나인 영장주의 원칙을 배제 내지는 폐기하려는 주장에 지나지 않아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구속영장이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그 피고인은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즉시 석방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따라서 판결의 선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불법구금행위를 계속한 피청구인의 소위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이유를 보충합니다.

1995. 11.

헌법재판소 귀중

## 구속 피의·피고인 석방절차 개선지침(법무부)

무죄,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구속 피의·피고인에 대한 석방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수용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석방절차 개선지침을 시달하니 각 기관장은 자체 실정에 알맞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1. 대상자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한 석방 예정 수용자(이하 석방 예정 수용자라 함)

\* 근거: 형사소송법 제331조

### 2. 계구 사용

석방예정 수용자에 대하여는 시승·시갑 등 계구를 사용하지 않고 무계구 상태로 환소

단, 본건 이외 2형의 집행예정자, 별건 수사중인 자, 정신질환등으로 자해 우려가 있는 자, 법정소란 등 규율 위반행위자 등 특이수용자는 계구 사용

### 3. 사전 석방절차 준비 시행

○ 출정현장에서 석방 예정 수용자를 유선으로 통보받은 후 해당과에서 신분카드 정리 및 석방 부적격 사유 유무 확인 등 사전 석방 준비 시행

○ 석방 예정 수용자 환소 후 석방 예정 수용자 대기실등 일정한 장소에 집급, 석방절차 진행

- 관급품 회수, 개인용품 및 영치금품 지급, 귀주 대책 등 사전 완료

### 4. 석방

○ 석방지휘서 접수 즉시 당직교감이 신분 대조 후 석방 실시

- 석방지휘서 접수 및 석방시간 명기

- 검찰과 협조, 석방지휘서 조기 발급 및 신속한 발송접수체제 구축으로 석방 대기시간 최대한 단축

\* 근거: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 제461조 검찰사전사무규칙 제126조 제1항, 제2항

### 5. 행정사항

○ 각 지방교정청장은 관내 기관의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받아 미흡한 부분 보완 지시 및 지속적인 지도 감독 시행

○ 본 개선방안은 97. 12. 1.부터 시행하고 기지시된 「교정 835.6-19592(71.10.28) 구속 피의, 피고인 석방절차에 따른 지시」는 폐지함. 끝.

## 석방지휘신속처리지침(검찰)

### 1. 목적

검사의 결정이나 형사소송법 제331조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석방하여야 할 구속피의자나 구속피고인에 대하여 석방지휘를 신속히 함으로써 당사자나 그 가족이 장시간 대기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음

### 2. 검찰석방사건의 신속처리

가. 검사의 불기소결정, 약식명령청구 등으로 검찰에서 구속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오전 중에 사건을 처리하여 구속피의자가 일과시간중에 석방되도록 한다.

나. 벌금예납지연, 친고죄에 대하여 오후 늦게 고소가 취소된 경우등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 무죄등이 선고된 구속피고인의 신속한 석방지휘

가. 공판관여검사는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법원의 선고내용을 확인하고, 재판장으로부터 석방판결대상자에 대한 판결문 또는 판결초고 사본이나 재판결과 통지 또는 석방판결대상자 명단(이하 '재판결과 통지 등' 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아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즉석에서 교도관에게 교부한다.

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석방자 명단 또는 석방

지휘서를 유선 또는 팩스로 송부하여 석방에 따르는 행정처리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석방대상 피고인이 구치소 또는 교도소 도착 후 지체 없이 탈의·영치품 반환 등 필요한 절차를 종료한 후 귀가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교도관으로 하여금 석방자에 대하여는 포승·수갑 등 계구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임의동행하되 자유인으로서 처우하도록 한다.

라. 선고기일 전일에 선고예정장에 대한 여죄의 유무, 벌금 미납 사실의 유무 등을 조회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마. 사건사무 담당직원은 공판관여검사로부터 재판결과 통지등을 전달받아 구속감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4. 법원과의 업무협조 강화

각급청별로 재판장이 선고 직후 재판결과 통지등을 교부하여주도록 법원과 긴밀히 협조한다.

### 부칙

이 지침은 97. 12. 1.부터 시행한다.

## 헌법재판소 결정

사 건 95헌마247 불법구금 위헌확인  
 청구인 변재신  
 제주 북제주군 한림읍 동명리 815  
 대리인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병모  
 피신청인 1.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2. 제주교도소장

###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4. 10. 10. 살인 혐의로 제주경찰서에 구속되었다. 같은 달 31. 제주지방법원(94고합252)에 구속 기소되어 1995. 4. 8.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광주고등법원 제주부(95노11)에 항소하여 1995. 7. 27. 10:00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의 변호인은 같은 날 12:07경 피청구인 제주교도소장에게 청구인을 지체 없이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동 피청구인은 검사의 석방지휘 없이는 미결수용자를 석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피청구인 제주검찰청 검사의 석방지휘서가 같

은 날 15:06경 도착하자, 비로소 청구인을 석방하였다.

법원에서 청구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한 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들이 청구인을 즉시 석방하지 아니하고 계속 구금한 행위는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1995. 8. 18. 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 나. 심판의 대상

법원이 미결수용자로 구속중에 있는 피고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1995. 7. 27. 10:00경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들이 즉시 석방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06까지 청구인을 계속 구금한 이 사건 구금행위의 위헌 여부이다.

#### 2. 청구인의 주장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피청구인 제주교도소장의 이 사건 구금행위는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준항고절차에 의하여 구제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선고된 당일

15:30경 이미 석방되었으므로, 준항고에 의하여 구금행위를 취소할 실익이 없고, 행정소송의 이익도 없으므로 그 절차에 의하여 구제될 수 없다.

(2) 헌법소원은 단순히 주관적 권리 구제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보장에 제도의 본질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미 석방되어 기본권 침해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헌법소원심판은 심판의 이익이 있다.

(3)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속되지 아니하고(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무죄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 영장의 효력은 상실되므로(형사소송법 제331조) 즉시 피구속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검사의 석방지휘 등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헌법이나 법률에서 찾아볼 수 없다.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계속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

(4) 무죄등 판결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을 교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편의 때문에 계속 구금할 수는 없다. 첫째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수의(囚衣)등을 착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기본권 침해인 것이므로 수의 회수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피고인을 계속하여 구금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고, 둘째로 식기류, 침구류 등은 당초부터 교도소 당국이 소유, 관리하면서 미결수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를 회수하기 위해 구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셋째로 수용 당시의 휴대금품 또는 영치된 금품 등은 판결선고 전에 미리 반환할 수 있게 준비하여 법정에서 무죄등 판결이 선고된 즉시 이를 반환할 수 있는 것이고, 넷째로 오인 석방을 방지하기 위한 확인절차와 귀가에 필요한 여비등의 파악과 보호대책의 강구 역시 미리 준비하여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

(5)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헌법 제10조 후문이 정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에도 위반한 것이다.

##### 나. 법무부장관 및 제주교도소장의 의견 요지

(1)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준항고 또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될 수 있는데,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무죄선고일인 1995. 7. 27. 15:06경 이미 석방되어 기본권 침해가 종료되었으므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

(2) 형사소송법 제331조는 구속영장의 실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석방에 관한 구체적 인 행정적 조치는 행형법에 따라야 한다. 행형법 제53조는 "수용자의 석방은 사면, 형기종료 또는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조사한 후 소장이 이를 행한다" 제54조 제2항은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의한 석방은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서류"는 검사의 석방지휘서를 의미한다. 따라서 제주교도소장이 1995. 7. 27. 14:55경 청구인에 대한 검사의 석방지휘서를 접수한 뒤, 5시간 이내인 같은 날 15:06경 출소를 하게 한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신체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교정시설과 같은 사회방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수용기관이 행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석방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 무죄선고를 받은 자를 수용시설에 보호하는 것은 정당하고,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형사소송법 제460조 제1항, 제461조 및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재판집행의 지휘·감독"은 검사의 직무와 권한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26조는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

하여 구속영장이 실효된 때에는 판결이 선고된 날에 지체없이 피고인을 석방하여야 한다. 사건사무담당 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제1항의 재판결과 통지를 송부 받은 때에는 당일에 구속감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석방절차는 ① 수용중 지급한 각종 지급품의 회수, ② 수용시 휴대금품 또는 수용중 영치된 금품의 수량 확인 및 환급, ③ 오인석방을 방지하기 위한 석방지휘서류와 석방될 자의 본인 여부의 확인, 귀가에 필요한 피복·여비의 유무 및 무의탁자의 석방 후 귀가 보호대책의 강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말할 수 없다.

(5) 법정에서 판결선고만으로 바로 구속피고인을 석방한다면, 피고인의 계호에 임한 교도관이 판결내용을 듣고, 본 것만을 근거로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법원이 선고한 사실을 확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형식과 절차를 둬으로써, 피고인을 구속한 검사에게 재판의 내용을 통고하고, 이를 검사가 확인한 뒤 수용시설의 장에게 석방을 명하는 것은 인신구속과 석방의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6) 교도소장이 구속피고인의 석방을 예상하며 사전에 준비를 하면 된다는 주장은 재판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교정시설의 장이 법원의 고유권한인 재판을 일방적으로 예측하여 출소대상자를 미리 정하고 출소준비를 한다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출소당사자에 대한 휴대금품이나 영치금품의 수불도 출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확인 지급되어야 하며, 수용생활에 필요한 용품도 출소 직전까지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석방을 위한 절차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정당성을 가진다.

### 3. 판단

이 헌법소원심판은 법원에서 무죄판결의 선고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석방대상 피고인을 법정에서 즉시 석방하지 아니하고 석방절차를 밟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 사실상 구금한 행위가 헌법상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가. 먼저 청구인의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에 대한 청구부분을 검토한다.

행형법에 의하면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는 구속영장의 집행은 받은 자는 구치소나 교도소 또는 소년교도소 안의 미결수용실에 수용하고, 구치소, 교도소, 소년교도소(이하 "교도소"라 한다)의 장이 이들 수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행형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8조). 검사는 구속영장이나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 지휘할 권한(형사소송법 제81조, 제460조)과 교도소를 수시로 시찰할 권한만을 가지는 것이다(행형법 제5조 제2항). 검사는 청구인의 구금행위라는 사실행위를 행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없고,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피고인을 구속·구금하는 사실행위는 교도소장이 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무죄판결의 선고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구속 내지 감금한 사실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다음 청구인의 제주교도소장에 대한 청구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청구인은 1995. 7. 27. 10:00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날 15:06경 석방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상태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하겠다.

형사소송법 제331조에 의하면 무죄등 판결 선고

와 동시에 바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무죄등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즉시 석방되어야 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 참조, 판례집 제4권 853, 867면). 바꾸어 말하면 교도관이 석방절차를 밟는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석방대상 피고인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교도소로 다시 연행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내세운다고 할지라도 헌법상의 정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2) 그러나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여주는 제도이므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 등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가 종료됨으로써 그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등을 취소할 실익이 없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다. 다만 동종의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재판소의 견해이다(헌법재판소 1992. 1. 28. 선고, 91헌마111 결정. 판례집 제4권 51, 56면; 1997. 3. 27. 선고, 92헌마273 결정. 판례집 제9권 1집 337, 342면).

이 헌법소원심판 계속중, 법무부장관은 1997. 11. 20. "구속피의·피고인석방절차개선지침시달"을 수립·시행하고, 검찰총장은 1997. 12. 1. "석방지휘 신속처리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이들 지침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31조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교도관은 석방대상 피고인에 대하여 포승·수갑 등 계구(戒具) 사용을 금하고 교도소에 임의(任意) 동행하되 자유인으로서 처우한다. 공판판여 검사는 법정에서 선고내용을 확인하고, 재판장으로부터 석방대상자에 대한 판결문 또는 판결초고 사본이나 재판결과 통지 또는 석방대상자 명단을 교부받

아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즉석에서 교도관에게 교부한다. 교도소에 석방자 명단 또는 석방지휘서를 우선으로 알려주거나 팩스로 보내어 석방에 따르는 행정처리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석방대상 피고인이 교도소 도착 후 지체없이 탈의·영치품 반환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친 다음 귀가할 수 있도록 한다. 교도소에 임의로 동행하는 석방 대상 피고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 재판장은 판결 선고 직후 석방 대상 피고인의 재판결과 통지등을 공판판여 검사에게 교부하여주도록 법원과 긴밀히 협조한다.

(3) 이러한 일련의 사실에 의하여 생각건대, 무죄등 판결선고 후 석방대상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지급한 각종 지급품의 회수, 수용시의 휴대금품 또는 수용중 영치된 금품의 반환 내지 환급문제 때문에 임의로 교도관과 교도소에 동행하는 것은 무방하나 피고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의사에 반하여 교도소로 연행하는 것은 헌법 제12조의 규정에 비추어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위 지침의 각 제정·시행으로 더 이상 법정에서 석방대상 피고인을 교도관이 석방절차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의 없이 교도소로 연행 내지 구금하는 행위를 계속 반복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특히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제주교도소장에 대한 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심판청구는 모두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판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재판장	재판관	김용준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재화
	재판관	조승형
	재판관	정경식
	재판관	고중석
	재판관	신창언
주심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 사업 및 업무보고 (97년 11월 28일~98년 1월 6일)

### I. 모임 현황보고

회원 현황 : 본부 189,  
부산·경남지부 28명,  
대전·충청지부 10명  
총 227명

### II. 사업 및 업무보고

#### 가. 사무국 업무 보고

- (1) 「전두환, 노태우씨 등의 사면에 즈음한 우리의 견해」성명서 발표 / 12. 22.
- (2) 11월 정기월례회 / 11. 28.(금) 18:30  
- 36명 참가  
- 영화 <레드헌트> 상영  
- 법조비리개혁모임에 대한 경과보고 및 토론 / 손광운 회원
- (3) 제15대 대통령선거 후보진영 정강, 정책 비교평가토론회 개최 / 12. 5.(금) 12:00 출판문화회관. 민교협, 민예총, 학술단체협의회 등과 공동
- (4) 법조비리정화 토론회 개최 / 12. 11.(목) 14:30 서울지방변호사회 중회의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공동
- (5) 97년 민변총년회 / 12. 29.(월) 18:00 토속호텔 지점  
- 60명 참가
- (6) 98년 신년하례회 / 98. 1. 5.(월) 민변사무실
- (7) 변론배당
  - ① 조영호(한양대): 한총련 대의원, 국보등 / 김호철 회원
  - ② 조용국(명지대): 집시, 화염병 등 / 이상호 회원

- ③ 장희철(산업대): 국보등 / 정연순 회원
- ④ 김인호(한양대): 국보, 집시 등 / 선병주 회원
- ⑤ 안병로(홍익대), 최순자(홍익대): 국보, 집시 등 / 이인호 회원

### II. 상임위원회 보고

#### 가. 기획위원회

- (1) 회의: 12. 3.(수) 18:30 시민  
: 법조비리정화방안에 대한 건 : 법조비리정화방안에 대해 김한수 위원이 정리한 내용을 기초로 논의하다.  
① 문제의 초점을 우선적으로 경찰수사관이 개입된 형사사건에 맞추기로 하고 장기적 과제와 단기적 대책 등으로 나누어 논의하다.  
②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협회에 건의하기로 하다.  
③ 김한수 회원의 정리부분 중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실현 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해보기로 하다.  
- 전관들의 업무 제한에 대해서는 법조화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의무윤리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표본으로 의정부 사건의 실태를 조사하여, 백서를 만들도록 요구하기로 하다.  
- 실태조사의 하나로 서울의 경우 수임건수 상위 10위 이내 변호사에 대해 수임경위를 설명하도록 요구하기로 하다.  
④ 그외 불구속재판의 확대, 신고센터의 설치 등은 장기적 과제로 추후에 재논의하기로 하다.

#### 나. 회원위원회

다. 출판홍보위원회

- 경찰의 봉쇄입장에도 60여명이 참석 6시까지 토론을 진행하였음

② <레드헌트>집중상영조직 및 실행의 건

- 현재 상영조직현황이 미미하다고 보고하고, 각 단체를 추동하여 상영을 확대하기로 하다.

- 12. 7.~12. 10.에 명동성당에서 공대위 중심의 농성을 진행하기로 하고, 각 단체에서는 지지방문이나 『한겨레신문』에 지지광고등을 하기로 하다. 12. 10.에는 공대위 각 단체들이 집중하는 집회를 갖기로 하다.

- 각 단체는 실정에 맞게 다음 주중으로 <레드헌트> 상영일정을 잡고, 공개상영이 불가능할 경우 회원들끼리 비공개로 상영하기로 하고, 설문조사 작업을 하여보았다는 근거를 남기기로 하다.

③ 공안탄압에 대한 대응건

- 각 단체의 상황이 열악하여 책임질 수 있는 단체가 거의 없으므로 공대위가 책임지고 공동성명, 기자회견, 문화예술인선언 등을 조직하기로 하고, 우선은 12. 10. 명동성당 집회에 집중하기로 하다.

(4) 민주연대, 집행실무자회의 / 12. 12.(금) 9:00 마로니에 커피숍

① 경제난국에 대한 공동대책기구 구성의 건

- 민주노총의 중앙위 결정사항과 제안을 들음: 김태현 기획국장

- 보다 구체적인 제안과 단체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합의하다.

- 각 단체는 별도의 공동대책기구 구성의 필요성, 명칭, 형식, 사업내용을 모두 12. 16.까지 깊이있게 검토하여 의견을 제출하기로 하다.

는 단체의 연명으로 하며, 발표시점은 12. 16.(화) 오전으로 하다.

마. 국제연대위원회

(1) 회의: 인권문제 간담회 / 12. 16.(화) 18:00 민변

① 아시아태평양 인권단체 촉진팀의 결정사항 보고

- 지난 11. 26.~28.까지 홍콩에서 인권단체 면담과 국가보안법 캠페인에 관한 워크숍 개최

- ICHRDD에서 한국이 받아들인다면 8만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힘.

② 캠페인의 목표

- 유엔인권위에 국보법 특별보고관 설치 또는 기존의 비상사태 특별보고관의 임무 확대

- 유엔 인권위등 국제기구 회의 참가, 국가보안법 문제 제기

- 각국에서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캠페인을 통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 지역적 확산 등을 달성하고자 함.

③ 간담회 논의내용

- 지원금 8만달러에 국내에서도 기금을 모아 16만달러정도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국내에서도 책임질 수 있는 단위가 캠페인을 진행해야 한다.

- 각 단체가 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을 연동하여 이를 더욱 내실 있게 준비하기로 하다.

- 참여단체를 확대하고, 사업이 필요한지 공유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다.

- 공대위의 틀보다 기획팀을 구성해 앞으로의 연

가. 노동위원회

(1) 회의: 11. 26.(수) 12:00 호화반점

① 민주노총설립 신고서 반려처분취소소송 진행 사항

- 11. 28.(금) 12:00 민변사무실에서 민주노총 김태연 법규부장과 소송대리인단 모임을 갖고 진행방향을 논의하기로 하다.

② 전기협, 자문변호사 요청건

- 나라종합법률사무소에서 자문을 맡고, 향후 공유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와 공유하기로 하다.

(2) 회의: 12. 4.(목) 18:30 민변사무실

① 『노동법 해설』 집필에 관한 건.

- 법개정 이후 출판된 노동법 교재들을 스크린한 후 원고 작성하기로 하다.

- 사례 소개는 대법원판례 정도로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급심이나 행정해석 등을 보완하며, 현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상세히 기술하기로 하다.

- 중복 기술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필자들간에 상호 연락을 통하여 중복 기술되거나 아예 빠져버리는 일이 없도록 함.

② 택시개혁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회 결과보고 / 12. 1.(월) 17:00 녹색소비자연대

- 건교부의 월급제 합의 타결 발표의 진상과 택시제도개선추진위원회 진행 경과

·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였음에도 건교부에서는 완전 합의 타결된 것으로 발표

· 98. 2. 1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와 월급



라서 택시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개선된 것이 전혀 없음.

· 민택노련에서는 대선정국과 경제위기 등의 사회분위기를 감안하여 총파업을 98. 2. 이후로 연기하기로 하되, 대정부·대사업주 투쟁은 계속하기로 하다.

- 향후 시민단체들의 대응방안

· 친절한 택시만들기 표어 및 포스터 걸기 지속  
운수노동자 처우개선 관련 포럼 준비

· 심야 승차 거부 및 골라 태우기 택시비디오 촬영과 택시 잡는 노란장갑 제작 문제 등 검토

(3) 회의: 12. 10.(수) 12:00 호화반점

① 12월 전체모임 준비

② 민주노총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소송 제1차 기일 경과보고

-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 제269차 회의 보고서 및 국제노동기구에 대한 제소장 관련 부분 번역본을 민주노총에 요청하기로 하다.

(4) 회의: 12. 17.(수) 12:00 호화반점

① 12월 전체모임 평가

- 외부인사(특히 현장)를 초청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회원들만 참석하여 토론하는 것보다 활력이 있고 좋았다.

- 회원 참석이 저조하여 앞으로 참석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다.

- 2개월에 1회씩 전체모임을 갖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되, 때에 따라 등산등 형식을 다채롭게 하여 참여를 높이고 모임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발제 및 토론을 정리하여 『이달의 민변』에 신기로 하다.

② '한국노동연구단체협의회' 활동 결합의 건

- 가맹단체와 활동내용 등을 확인한 후 다시 논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다.

③ 현장과의 연계활동 강화에 관한 건

- 우선 전체모임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다.

- 각 연맹단위 법규부장 간담회등을 통하여 기본틀을 마련한다.

- 내적 준비를 마친 뒤 교육등을 통한 노조와의 대면기회를 확대하는 장을 마련하기로 하다.

나. 언론위원회

(1) 회의: 12. 4.(목) 19:00 민변 - 전자주민카드특별위, 정보통신위와 연석회의

① 소송보고

- 국회의장, 안기부장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각각, 공보처장관 사건을 각하, 중앙선관위 사건은 결심되었다고 각각 보고하다. 한국통신노조와 한총련의 CUG 폐쇄건은 대법원 계류중

② 언론위 위기상황에 관한 건

- 언론위원들의 언론문제에 관한 관심 저하와 참석률 저조, 현재 활동 가능한 위원이 박형상, 임영화, 이유정, 조광희, 김기중 위원 정도라는 데 의견을 같이함. 마땅한 활성화 방안이 없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임.

- 언론위원장의 사퇴 표명

(2) 회의: 12. 22.(월) 19:00 탐라 - 송년회

① 위원장 사퇴의 문제와 향후 언론위 운영방안

- 안상운 위원장의 사퇴의 변을 듣고, 상호 논의한 결과 수용하기로 하다.

- 차기 위원장 문제

· 언론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언론분야의 연구를 계속할 예정으로 있는 박형상 위원을 추천

· 박위원의 몇 가지 신상 발언과 그 정도의 신상 문제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위원들의 의견 개진

· 박위원의 위원장직 수락

· 이후의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절차에서

언론위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요청기로 하다.

③ 언론위 운영방안

· 위원장 교체문제와 별도로 소속 위원들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 위원장 선출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새로운 체제에 대한 구상 발표

다. 사회복지위원회

라. 환경위원회

마. 사법위원회

바. 통일위원회

(1) 북한동포돕기 민간단체전국회의 북한지원사업 진행경과 보고

- 민변을 포함한 북한동포지원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의 모금이 계속되고 있다.

- 보내는 일시는 남북 적십자회담이 재개되는 12월초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전달일자가 늦어짐에 따라 각 단체별 모금운동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다.

- 11. 29.까지 모임의 모금총액은 870만원에 이르다.

(2) 회의: 12. 17.(수) 19:00 한결

- '북한의 부동산 제도'에 대한 발제 및 토론

사. 경제정의위원회

아. 동북아특별위원회

(1) 회의: 12. 11.(목) 18:30 민변사무실

- '열린체제의 러시아 대내외정책' 강연 / 강사: 심경옥 박사(국방연구원 연구위원)

V. 임시특별위원회

가. 민변 1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

나. 형사자료집발간팀

다. 통합전자주민카드대책특별위원회

(1) 회의: 12. 4. 19:00 민변

① 경과보고

- 그동안 국회주민등록법 개정안 통과와 이를 둘러싼 시민단체공대위의 성명서 발표, 국회 앞 시위 등을 보고하다.

② 민변의 역할

- 주민등록법 개정법률안의 폐지법률안의 입안, 합리적인 주민등록제도 마련, 사회유력인사들의 서명작업이 진행중이므로, 법조인 서명행식으로 민변의 동참을 요청하기로 하다.

-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정보통신위원회에 통합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반대 의견 없이 통합을 결의하다.

라. 정보통신위원회

(1) 회의: 12. 4. 19:00 민변

① 전자주민카드와의 통합문제

- 긍정적으로 검토함.

② 『정보통신검열백서』 제작팀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건.

- 정보통신위원회 예산으로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다.

- 백서에 민변의 명의를 넣는 문제는 민변이 백서 제작에 참여한 정도가 크지 않고 내용의 품질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민변 명의보다는 '민변 정보통신위원회'의 이름을 부기하기로 하다.

(2) 전자주민카드반대 시민단체공대위 집행위 결과 / 12. 10.

① 서명운동에 관한 건

- 서명자 명단 공개시기는 애초에 12. 10.까지 하기로 하였으나 좀더 큰 영향력과 파장을 고려하여 대선 후 2월 임시국회에 맞춰 서명자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다. 그러나, 각 단체별로 서명받은 것은 단체 상황에 맞게 공개하기로 하다.

- 1월말까지 사회인사 1만인 선언을 진행하고, 일반인 서명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하다.

② 기타 자료집 개정작업, 국회청원 등은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하다.

③ 조직확대 개편사업은 참석자 미달로 다음 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다.

(3) 전자주민카드반대 시민단체공대위 / 12. 23. (화) 오전 7시 참여연대 회의실

① 현상황 평가

- 전자주민카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정당의 후보가 당선이 되었음. 따라서 당선자의

입장으로 보면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하지만 국회에서 국민회의는 소수임.

- 따라서 낙관만 하고 있을 실정은 아니며, 국민회의가 입장을 바꾸거나 전문행정관료들로부터 설득을 당할 경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② 논의 결과

- 각 단체는 사안의 성격상 쟁점이 되기 어려운 전자주민카드 문제를 국민회의측과 접촉하는 공간에서 의식적으로 반드시 제기하기로 하다.

- 각 단체 담당자는 공대위의 새로운 입장을 단체 구성원에게 보고 또는 전파하기로 하다.

- 새로운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자 명단과 함께 12. 29.(월)에 공표하기로 하다.

- 새로운 제도를 입안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다. 토론회 개최일자는 98. 2. 6. 또는 2. 7.로 잠정결정하다(2월 첫주 금요일 또는 토요일임).

마. 5.18 특별위원회

# 성명서

## 전두환, 노태우씨 사면에 즈음한 우리의 견해

우리는 오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등 12.12, 5.18 관련자들의 사면복권과 석방을 보고, 참담한 심경을 가눌 길이 없다.

우리는 지난 해부터 여러 번 성명을 통하여 전두환, 노태우 등 12.12, 5.18 관련자들의 진정한 참회와 반성이 없는 사면을 반대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대선이 끝나자마자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합의하여,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서둘러 사면을 논의하고 단행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하는 바이다.

이번 사면은 한마디로 정치권의 정치논리에 의한 사면일뿐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하고,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채로 사면권을 남용한 조치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직도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번도 국민 앞에 사죄한 적도 없고, 오히려 자신들이 정치적 희생양이었다고 주장하는 후안무치를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이제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국민에게 사죄하여야 할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두 사람에겐 자신들에게 부과된 추징금은 전액 자진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앞으로 일체의 정치활동도 하지 말고 자중하기를 바란다.

이울러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요구한다.

진정한 국민대화합을 바란다면, 5·6공 세력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인권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조치, 그리고 그들에 의해 감옥에 갇힌 양심수를 석방하는 조치가 우선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치가 병행되지 아니하고는 이번 사면조치는 어떠한 정당성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언제 있게 될 지 모르는 많은 특별사면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에 의한 특별사면이 남용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가 전무한 현실이다. 따라서 차체에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입법조치를 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97. 12.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최영도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정기구독회원 모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한 연구·조사, 변론, 여론 형성 및 연대활동을 통하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직된 전문 법률가단체입니다. 민변에서는 위와 같은 목적을 이루고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소속회원들의 성과물을 매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이라는 월간지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외부 인권단체 자료와 법학자, 인권운동가의 글도 함께 게재함으로써, 법률·인권지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변 회원들에게만 배포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을, 통권 제10호(97년 7월호)부터 비회원에게도 판매합니다.

책값 권당 3,000원 / 1년 정기구독료 30,000원

### 12.12, 5.18 판결 평석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5.18 특별소위원회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민족정기와 사회정의의 바로세워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압력으로, 이른바 5.18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1997. 4. 17. 대법원에서는 전두환·노태우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된다는 역사적 본보기가 된 이 판결에 깊이 관여하여온 민변에서는 판결에 대하여 조속히 검토하여 문헌으로 남겨둘 것을 예정하였고, 이제 「12.12, 5.18 판결 평석집」의 발간을 통하여 이 사건 판결의 의미를 더욱 확실히 하여두고자 합니다.

차례: 성공한 쿠데타의 처벌 / 12.12 군사반란행위상의 쟁점 / 내란죄의 종료시기 - 공소시효의 기산점 / 내란목적살인죄의 적용요건 / 전·노 비자금과 포괄적 뇌물죄 / 5.18 판결, 그 미완의 과제

신국판 198쪽 / 값 4,000원

### 1996 노동판례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996 노동판례비평」은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회원들과 젊은 노동법 교수, 노동법 전공 판사들의 1996년 대법원 노동판결 분석서입니다. 책의 제1부에서는 1996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노동판결 중 판례공보에 게재된 134건의 판결성향을 분석하고 분석대상이 된 판결의 목록을 게재하였으며, 제2부에서는 주요 판결에 대한 평석을 수록하였습니다. 시민법의 형식적 평등원리를 실질적 평등원리에 따라 수정하여 불완전한 시민사회를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신국판 392쪽 / 값 8,000원

\* 위 책의 정기구독 및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구좌로 입금하시고 민변 사무국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상업 431-07-107297 최미희 / 구입문의: 민변 사무국(02-522-7284)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8년 1월호(통권 제16호)

발행일 98년 1월 26일

발행인 최영도

편집인 출판홍보위원회  
박원순 이석태 조용환 박성호 차병직  
이백수 정연순 정종섭 염규홍 최미희

발행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소 서초구 서초동 1572-12 명지빌딩 4층  
전화 522-7284 팩스 522-7285  
천리안 m321  
하이텔 minbyun7

값 3,000 원

